

2024년 방송통신 분야 법령·행정규칙 규제개선 사항 및 규제비용 분석

Cost-in, Cost-out Analysis of
Regulatory Revision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ctor in 2024

2024.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24년 방송통신 분야 법령·행정규칙 규제개선 사항 및 규제비용 분석

(Cost-in, Cost-out Analysis of Regulatory Revision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ctor in 2024)

주성희/김찬/송민선/정은진

2024.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4년 방송통신 분야 법령·행정규칙 규제개선
사항 및 규제비용 분석』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주성희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김찬 부연구위원
송민선 전문연구원
정은진 전문연구원

목 차

요약문	ix
제1장 서론	1
1.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경과	1
2. 규제비용관리제 관련 해외 사례	5
3.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9
제2장 2024년 수행 규제비용분석	11
제1절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	15
1. 규제 개요	15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18
3. 주요 분석 내용	21
제2절 금지대상 건물 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	26
1. 규제 개요	26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27
3. 주요 분석 내용	29
제3절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 특례 ..	31
1. 규제 개요	31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32
3. 주요 분석 내용	36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중 규제 분류	51
제1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현황	51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분류 및 분석	53

1. 규제 분류 방법 및 분류 틀	53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분류 결과	60
3. 규제 분류 분석 결과의 합의	76
제 4 장 결 론	79
참고문헌	85
부 록	86
[부록 1]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86
[부록 2]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관련 법령	88
[부록 3]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관련 규정	90
[부록 4] 비용편의 연균계산표	91
[부록 5]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분류	92

표 목 차

〈표 1-1〉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대상기관	2
〈표 1-2〉 「행정규제기본법」 중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4
〈표 1-3〉 Circular A-4의 규제영향분석 주요 항목	8
〈표 2-1〉 비용·편익 분석 산정식	11
〈표 2-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의 3	12
〈표 2-3〉 초고속인터넷 해지건수 및 할인반환금 현황	15
〈표 2-4〉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16
〈표 2-5〉 집합건물 다회선(1:8이상) 신규가입 및 매출액현황(2019-2021)	17
〈표 2-6〉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3	18
〈표 2-7〉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개정안	19
〈표 2-8〉 통신사별 대표적인 다회선 상품	23
〈표 2-9〉 독점계약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	27
〈표 2-10〉 현행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현황(매반기)	32
〈표 2-11〉 외주 및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경과	34
〈표 2-12〉 지역방송사의 편성	37
〈표 2-13〉 지역방송사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평균 편성비율	39
〈표 2-14〉 제작원별 편성비율 (2018-2022)	39
〈표 2-15〉 지역방송사 [자체]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평균 편성비율	40
〈표 2-16〉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유형별 평균 제작/구매 비용	43
〈표 2-17〉 지역방송사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시간 변화(2020-2022)	44
〈표 3-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 현황	52
〈표 3-2〉 기존 연구의 규제 조항 분류 기준	55

〈표 3-3〉 본 연구의 규제 조항 분류 기준	60
〈표 3-4〉 법령군별 규제 개선의 용이도 분류	63
〈표 3-5〉 법령군별 규제 성격 분류	66
〈표 3-6〉 상위 6개 법령군의 규제 성격 혼재 조항	67
〈표 3-7〉 모법에 따른 규제 성격 혼재 정도	67
〈표 3-8〉 상위 6개 법령군의 규제 방식	70
〈표 3-9〉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행의 비교	72
〈표 3-10〉 상위 6개 법령군의 규제일몰방식 분류 결과	74
〈표 3-11〉 법령군별 규제비용 발생 여부	76

그림 목 차

[그림 2-1] 집합건물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방식	16
[그림 3-1] 규제 개선의 용이도에 따른 구분	62
[그림 3-2] 규제 성격에 따른 분류	65
[그림 3-3] 규제 방식에 따른 분류	69
[그림 3-4] 규제일몰 방식에 따른 분류	73
[그림 3-5] 규제비용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	75

요 약 문

1. 제 목

2024년 방송통신 분야 법령·행정규칙 규제개선 사항 및 규제비용 분석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2024년 중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규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규제 비용 관리제가 보다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본 연구는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주로 개별 개정안의 비용편익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규제 비용 관리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규제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먼저, 2024년 중 발생한 규제 개정안들의 개별 규제 비용 분석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에 서는 집합건물의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의 세부 유형 고시 개정안, 금지 대상 건물 관리 주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 그리고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

성비율 한시적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규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다음으로 규제 비용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11개에 포함된 규제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법령의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함

4. 연구 내용 및 결과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의 세부 유형에 관한 고시 개정의 경우 독점계약 체결 금지의 피규제자 즉,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집합건물 거주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 등 계량적 측정은 어려우나 중요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지 대상 건물 관리주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고시 개정 역시 피규제자에게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한편,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한시적 완화의 경우, 분석 결과 25개 지역방송사에게 2년의 규제 유예 기간 동안 약 47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우선 2024년 중 발생한 개별 규제 개정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규제 비용 분석의 실제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응한 규제 폐지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더 나아가 500여 건에 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에 대한 분류 및 분석 결과

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개별 규제 조항의 특성 파악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관리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6.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 분석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 규제에 대한 분류·분석은 규제 비용 관리제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좀 더 신속한 규제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SUMMARY

1. Title

Cost-in, Cost-out Analysis of Regulatory Revision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ctor in 2024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enefits and costs arising from the regulatory amendments implemented or scheduled for in 2024 and, in the long term, to discuss ways to reduce regulatory costs to ensure the smooth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to achieve the latter objective, this study systematically categorizes and organizes the provisions labeled as "regulation" in the Regulatory Information Portal under the laws manag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iming to reduce the time and effort required for future regulatory cost management and to contribute to the rational development and amendment of regulations in the future.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regulatory costs, this study examines key aspects related to (1) the detailed types of buildings subject to the prohibition of exclusive contracts in multi-unit buildings, (2) the proposed amendment on specific standards regarding the scope of management entities for buildings subject to exclusive contract prohibition, and (3) a temporary relaxation of the mandatory quota for programs produced by independent productions, imposed on regional broadcasters. An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costs and benefits arising from regulatory amendments.

Next, to reduce the costs and efforts associated with regulatory cost management, all the provisions labeled as “regulation” in the 11 law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re systematically classified,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4. Research Results

In the case of revising the notification on specific types of buildings subject to the prohibition of exclusive contracts in multi-unit buildings, no direct costs will be incurred on the regulated entities, i.e.,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However, this revision is expected to yield significant social benefits, such as protecting the choic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residents in those buildings, which, though difficult to quantify, are nonetheless essential.

Similarly, the revision to specify the scope of management entities for buildings subject to the prohibition is also not expected to incur additional costs on the regulated entities, but it is anticipated to provide benefits by reducing the potential for legal

disputes in the future by more accurately reflecting contractual realities.

Meanwhile, the temporary relaxation of the mandatory quota for independent productions' programs by regional commercial broadcasters is expected to generate benefits of approximately 4.7 billion KRW per year for the 25 regional commercial broadcast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conducted a cost-benefit analysis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gulations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in 2024, contributing to the accumulation of practical cases in regulatory cost analysis.

Furthermore, th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regul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ill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se regulations, thereby facilitating faster and more systematic regulatory management by the Commission in the future.

6. Expectations

A concrete and practical case analysis in this study, along with th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various regulations unde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jurisdiction, is expected to enhance the policy efficiency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an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ion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Regulations in 2024

Chapter 3. Classification of Regul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hapter 4. Conclusion

제 1 장 서 론

1.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경과

가. 규제 개혁의 기본 원칙

-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통해 규정됨
 -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규제 개혁의 기본 취지로 서술하고 있음
- 행정규제법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규제 개혁은 규제 제·개정 시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의 신설은 가능한 자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제정할 경우, 해당 규제가 피규제자에게 발생시키는 비용에 상응하는 규모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아울러 지속적인 규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규제 제·개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개정이 되는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 즉, 피규제자 및 해당 규제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 및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임

나. 제도 도입 경과

○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2014년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

-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규제비용 총량제 개념을 도입
- 2014년 하반기부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포함된 기존 규제 정비 조항에 근거하여 등록규제가 많은 8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해마다 그 적용 대상 부처를 확대해 옴
- 2016년 7월부터는 국무총리 훈령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규제비용관리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비용관리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정책 수립 및 규제관리 시 비용·편익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
- 2016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6년간 약 1조 3,700억 원의 순비용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됨 (한국경제인연합회, 2022. 9. 29)

※ 현재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은 외교, 안보 등 기관 특수성, 비용관리 실의 등을 고려하여 경제 분야 13개, 사회 분야 11개의 총 24개 중앙행정기관임

<표 1-1>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대상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경제분야 (13)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산림청, 특허청
사회분야 (11)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개인정보위, 식약처, 문화재청, 질병청

- 2022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에 해당하는 규제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존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의무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방식의 ‘규제비용감축제’를 도입 (조선일보, 2022.6.17.)

※ 규제비용감축제에 따라 부처별로 200% 내외의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인 규제 감축을 유도하고, 법령 제·개정 시 규제영향 분석을 내실화하는 것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세움¹⁾

다. 규제영향 및 비용편익 분석

○ 어떤 규제의 영향을 모든 측면에서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규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만한 영역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규제 비용을 정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작업임

- 이에 정부는 연중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하여 부처별로 규제 비용분석을 수행하여 규제영향평가의 자료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규제 품질 개선에 활용 중임
-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규제의 신설, 강화 시 행정규제기본법 제7호에서 규정하는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로서 기업, 소상공인 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²⁾ 피규제자로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분석을 수행함

1)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2.6.1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2)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한 규제,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연관된 규제, 금융·외환시스템 위협 방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수수료, 행정질서 및 행정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규제,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는 적용에서 제외됨

<표 1-2> 「행정규제기본법」 중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규제 담당 부처에서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전문적 검증을 위해서 2014년 6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KIPA)에 각각 규제연구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동년 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비용분석 및 검증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는 비용 전문위원회도 설치됨

-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경제 분야 13개 부처의 규제비용분석을 검증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회 분야 11개 부처의 규제비용분석을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

2. 규제비용관리제 관련 해외 사례

○ 영국 정부는 개별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는 규제영향평가제도(Regulation Impact Assessment: RIA)와 규제비용총량제 및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로 구분되는 규제비용관리제도를 운영

-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규제영향평가제도를 1998년에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규제 개혁 의제를 선도
- 2011년부터는 ‘One-In, One-Out’ (OIOO) 제도를 운영,³⁾ 신규 도입 규제가 기업에 순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
- 이후 2013년부터는 기존의 OIOO를 강화한 ‘One-In, Two-Out(OITO)’ 을 채택, 신규 규제 도입 시 그 규제 비용의 두 배에 달하는 비용감소나 편익을 제공하는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
- 영국 정부는 또한 6개월 간격으로 규제총량제 운영보고서(Statement of New Regulations: SNR)를 발행, 기업들이 규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부처가 규제완화 성과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OIOO/OITO 시행에 따라 영국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비용

3) 국내에서는 규제 비용을 기준으로 등가 이상의 교환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규제비용 관리를 ‘Cost-In, Cost-Out’ (CICO)으로 명명

유발규제(INs)는 총 119건, 비용완화규제(OUTs)는 213건, 비용불변규제(Zero Net Cost) 규제는 184건이 통과되었으며, 규제 비용 측면에서 22억 파운드(한화 약 3.7조 원)의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

- 2015년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비용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 규제 비용 감축 목표제 (Business Impact Target, BIT)를 도입하여 정부가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국행정연구원, 2024)
- 2023년 5월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Better Regulation Framework (BRF)’ 를 개정하여 규제영향분석 적용 범위를 가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는 등 보다 포괄적 범위로 확장하고, 독립적인 심사를 도입하고 규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한국행정연구원, 2024)

○ 네덜란드 역시 행정규제 개혁과 관련된 혁신적 조치를 도입하여 정부의 비효율을 개혁하고 기업 활동 여건 개선에 선도적으로 대응

- 네덜란드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 관련 자문위원회 (Slechte Committee)를 설립하여 행정부담의 축소를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표준비용모델 (Standard Cost Model: SCM)을 고안하여 정부나 규제당국의 규제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추산
- 이후 2003년 6월 연합협정(Coalition Agreement)에 기반하여 공공 부문 개혁을 도입한 지 3년 만에 전체 부처의 규제 비용이 평균 16.4% 줄어들
- 네덜란드의 행정규제개혁은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주로 기업의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 규제의 영향 중 정책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담 즉, 정부의 규제에 순응하기 위한 서류발행 비용과 시간의 축소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음

○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법령 및 행정 간소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83년에는 연방 차원에서 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과 행정의 간소화 작업을 추진

- 독일 역시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표준비용모델(SCM)에 기반하여 기존 규제의 행정 부담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 법안이 초래하는 잠재적 행정 비용을 예측하는 행정부담 측면의 비용감축을 추진. 20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비용이 2006년 대비 약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4월에는 “관료주의 축소와 선진입법 프로그램(Programm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을 내각에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이 선진입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독립된 감독 및 자문기구로서 국가 규제 감독위원회(Nationaler Normenkontrollat: NKR)의 신설,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한 행정비용 산정방식 도입 등임
- 2010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규제 영향분석과 유사한 법률 영향분석을 시행하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비용을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독일 역시 규제 신설·강화로 행정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하는 OIOO 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임

O 미국의 연방기관은 파급력이 큰 주요 규제에 대해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 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실시하며, 규제관리 관련 정책은 주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수립 및 시행됨

- 다만,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규제비용 관리제도 역시 마찬가지임 (한국행정연구원, 2024)
- 최근의 사례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 13771호를 통해 Two-for-One Rule(TFOR)과 규제 비용 상한제도(Regulatory Cost Cap)를 도입하였으나⁴⁾ 이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행정명령 13992호를 발표하여⁵⁾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TFOR, 규제비용상한제도 등의 효력을 정지시킴

4) Executive Order 13771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TFOR은 규제 1개 도입 시 2개 이상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 비용의 증가분을 상쇄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규제 비용 상한제도는 부처별로 규제 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해당 부처의 연간 규제 비용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규제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강제 (한국행정연구원, 2021)

-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1월 규제 비용분석에 대한 지침인 Circular A-4를 전면 개정하여 연방 차원의 규제 조치에 대한 편익 및 비용을 추정하고 보고하는 방식을 표준화하였으며, 규제 검토 절차를 현대화함 (한국행정연구원, 2024)

※ Circular A-4는 규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다양한 규제 대안의 검토, 각 규제 대안의 편익, 비용 및 이전(transfer) 추정, 규제 분석의 요약에 대한 작성 지침을 제공

<표 1-3> Circular A-4의 규제영향분석 주요 항목

항목	설명
규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질적으로(가능한 경우 양적으로도) 설명해야 하며, 특정 규제 상황에 대한 판단에 앞서 잠재적 필요성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
기준선의 정의	원칙적으로 무조치 기준선(no-action baseline)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규제가 없을 경우 현재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를 예측
다양한 규제 대안 검토	대안의 수와 내용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실행 가능한 경우 최선의 대안, 편익이 큰 대안, 비용이 적은 대안 등을 분석하는 것을 권장
각 규제 대안의 편익, 비용 및 이전 추정	분석 시 정량적(금전적, 비금전적) 및 정성적 편익, 비용 및 이전 모두 고려
규제 분석의 요약	가급적 별도의 요약문이나 서론 등에 회계 보고 및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표 등을 포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4.8.30)

5) Executive Order 13992 (Revocation of Certain Executive Orders Concerning Federal Regulation)

- 2016년 이래 규제비용관리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규제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 또는 피규제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아울러 규제비용관리제의 관리대상이 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3.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 규제비용관리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정안에 따른 피규제자와 그 외 집단,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발생 분야를 구분하고 각 분야별 구체적 분석이 필요
-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규제 비용 평가를 위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정의 및 대표적 분석 사례를 제시하는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을 참조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2017, 2023)
- 그러나 서로 다른 내용의 규제 사안별로 그 구체적인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세부 분석을 수행해야 함
- 특히 방송·통신 산업은 역사적으로 독과점 이슈 등 경쟁정책과 관련된 규제가 다수 존재하는 대표적 규제산업이므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임
- 방송·통신 사업은 그 특성상 어떤 사업자가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그 규제의 영향은 해당 사업자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및 방송·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범위 설정과 이에 기반한 규제 비용분석에 주의해야 함
- 해당 규제가 시장 참여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만 부과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경쟁 양상에 따라 그 효과 역시 차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편

익의 주체와 직·간접 효과의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방송통신 분야는 최근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중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는 등 매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사업자 간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합목적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 시급한 시점이며 사업자들이 경험하는 직접, 간접적인 효과는 물론, 방송통신 산업의 특성상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야 함
-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의 제·개정이나 유예 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직·간접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법규 제·개정 시에는 다양한 정책 이슈가 혼재하는 방송·통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해야 함

○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전반적 현황 및 특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수이지만, 현재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성격(경제적 규제 vs. 행정적 규제)과 파급 효과의 범위(특정 사업자, 산업전체, 국민), 일몰 여부, 비용발생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규제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해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분류 및 분석의 결과는 향후 규제개선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격과 강도의 규제들을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데 있어 기본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임

제 2 장 2024년 수행 규제비용분석

○ 제2장에서는 2024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제·개정 규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일부로 포함되는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제시함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규제안(일명, 규제대안)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해야 함
- 이 과정에서 특히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직접순비용의 현재가치를 연간비용으로 환산한 연간균등순비용이 관리의 대상이 됨
- 직접순비용의 현재가치란, 규제 시행으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1차적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직접비용’에서 ‘직접편익’을 제외한 ‘직접순비용’에 할인율⁶⁾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전환한 것이며, 이를 분석대상기간의 년수에 따라 나눈 것이 연간균등순비용임

<표 2-1> 비용·편익 분석 산정식

$$\text{직접순비용 현재가치} = (\text{직접비용} - \text{직접편익}) \times \text{할인율}$$

$$\text{연간균등순비용} = \text{직접순비용 현재가치} \div \text{분석대상기간 (년)}$$

○ 제2장에서 구체적인 분석 대상이 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①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의 세부 유형을 정하는 “금지 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 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
- ② 금지 대상 건물 관리주체의 범위를 정하는 “금지 대상 건물의 세부 유형 및

6) 할인율은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로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준용하며 2024년에는 4.5%가 적용됨

건물 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3조

- ③ 지역방송사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의 한시적 규제 완화

○ “금지 대상 건물의 세부 유형 및 건물 관리주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부록 1)은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의 세부 유형과 금지 대상 건물 관리주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해당 고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 전체에 대해 서비스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위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의 3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고시로, 2024년 7월 8일 입법 예고됨

<표 2-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의 3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5의2. (생략)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이 고시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두 개정안 모두 직접적인 피규제자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이며, 피규제자와 영향을 받는 집단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자 및 집합 건물의 관리주체, 그리고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임

○ 첫 번째 고시 개정안의 내용은 독점계약 금지 대상의 건물 범위에 다가구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의 범위를

정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규제자에게 직접 규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한 정량분석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 직접적인 규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 및 독점계약 방지로 인한 사업자 간 경쟁 증가와 같이 계량적 측정은 어렵지만 중요한 사회적 편익이 간접적 효과로 발생할 것으로 평가됨

○ 두 번째,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 관리주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고시 개정은 집합건물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집합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의 범위를 고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독점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자인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인력, 고용 등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고시 개정으로 인해 피규제자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한 정량분석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 그러나,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물 관리주체를 포함하도록 계약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임법령의 완결성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됨

○ 비용편익 분석은 각 규제의 개정에 앞서 규제영향평가의 일부로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규제 완화 또는 폐지의 경우 시행된 후 비용편익 분석이 수행되기도 함

- 이 보고서에 규제비용 분석이 포함된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용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규제 완화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부분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임

-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한시적 완화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지역방송사가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
- 이때 방송사의 일일 전체 방송 편성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방송사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함
 -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이 완화되면 지역방송사는 자체 프로그램 추가 제작이나 조달 비용이 적은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편성할 수도 있고, 수중계 프로그램 중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추가로 편성하는 선택도 가능
 - 다만 지역방송사가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제작 또는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MBC 본사나 서울 SBS의 수중계 프로그램 중에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광고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음
 - 따라서 지역방송사는 수중계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경우 가장 규제 완화의 편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MBC와 지역 민영 방송사 전체로 볼 때 2년 동안(3개년도 기준) 총 약 47억 원에 달하는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제 1 절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

1. 규제 개요

- 전기통신사업자가 건물주나 관리주체(이하 ‘건물관리주체’라 함)와 인터넷 및 결합상품서비스를 다회선 상품으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의 피해 발생⁷⁾
 - 해당 집합건물에 입주하는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해지로 인한 해지위약금, 유·무선 결합할인 해지 등의 피해 발생
 - 최근 5개년(2019.1 ~ 2024.6)간 독점계약으로 인한 초고속 인터넷 해지 건수는 총 95,600건 가량으로 추정

<표 2-3> 초고속인터넷 해지건수 및 할인반환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해지건수	2,128,189	2,020,490	1,880,069	1,837,706	1,941,998	933,224
독점계약 해지건수 (추정치)	18,940	17,982	16,732	16,355	17,283	8,305
해지할인 반환금	-	-	44,558	39,433	54,142	23,961

주: 1) 5개년 (2019.1~2024.6)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함
2) 2019, 2020년 할인반환금은 전산기간 만료로 추출 불가
3) 22.1월 이후 집합건물 독점계약으로 인한 해지시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할인반환금을 면제하고 있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7)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는 [부록 1] 참고

-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특정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뒤 이를 실제 서비스 이용자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실현하거나,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통신요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 발생

<표 2-4>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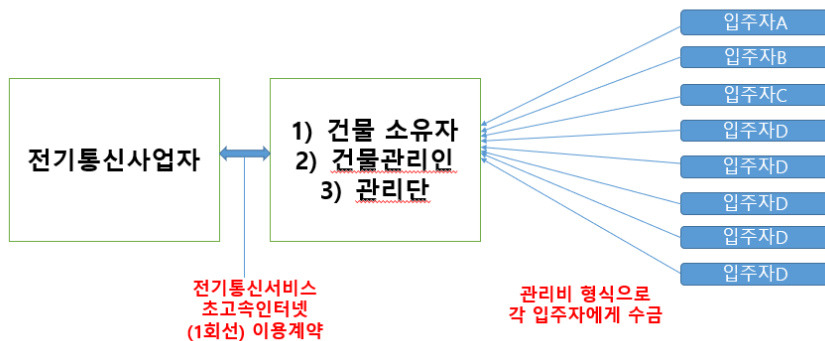
사업자	KT	SKT1)	LGU+	방통위	기타2)
민원	65	24	24	18	5
비율	47.8%	17.6%	17.6%	13.3%	3.7%

주 : 1) SKT는 SKB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있으므로, SKT 실적으로 집계

: 2) jcn울산방송에 대한 단독계약 위약금 민원 1건 이외 집합건물 관련 제도개선 관련 민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김상희 의원실 '2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中)

[그림 2-1] 집합건물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방식



- 최근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다회선 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개년(2019.1 ~ 2024.6)간 집합건물 다회선(1:8 이상) 신규가입건수는 초고속 인터넷 회선 기준 645,042건, IPTV대수기준 4,660,336건이며 이로 인한 매출액은 총 1707억원에 달함. 이중 일부는 독점적인 계약 내용을 포함
- 다만 다회선 계약과 집합건물 독점계약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2-5> 집합건물 다회선(1:8이상) 신규가입 및 매출액현황(2019-2021)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사업자	신규가입건수 (초고속인터넷 회선기준)	신규가입건수 (IPTV대수기준)	매출액현황 (초고속인터넷+IPTV)
2019	KT,SKB,SKT, LGU+, KTskylife, ,LGHV,HCN,C MB,딜라이브	156,951	1,255,608	36,524
2020		154,446	1,235,568	43,123
2021		156,967	1,255,736	45,927
2022		98,197	785,576	23,645
2023		48,192	85,536	14,153
2024		30,289	42,312	7,369

주 : 매출액 현황은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개통을 합한 매출액 추정치

- 해당 집합건물에 입주하려는 이용자는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전기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집합건물의 세부유형에 대한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 2018년 국회 지적에 따라 실태점검, 사업자들과의 제도개선 협의를 통해 ‘19. 8월 해지위약금 개선안(기존 사업자 해지위약금 50% 감면, 독점사업자 50% 상당 이용요금 감면) 마련·시행
 - 그러나, 사업자의 협조를 통한 해지위약금 중심의 자율적 개선으로 집합건물에서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건물관리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됨에 따라 이용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 노출
-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으로 발생하는 선택권 제한, 불공정 경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의3이 신설됨 (‘24. 1. 30. 공포, ’ 24. 7. 31. 시행)

<표 2-6>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3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5의2. (생략)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세부유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여 24. 1. 24. ~ 3. 10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제정(안)이 마련

- ‘24. 3. 20 ~ 5. 2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아래와 같은 세부 유형 개정안이 마련됨

<표 2-7>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조(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① 단체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그 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 2. 기업·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체계약 등만 가능한 건물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하고, 필요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외 유사 입법 사례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건물주와 케이블·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임차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 21.7월)
- FCC는 다세대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망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시행(’ 22.2월)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건물주와 단계별 또는 독점적 수익을 공유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통신사가 건물주와 맺은 독점 마케팅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
 - * 우리나라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 행정입법 권한이 있는 연방정부의 각 기관은 미국 관보에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안을 게시하여 의견수렴 절차 후 확정

3. 주요 분석 내용

■ 피규제자 : 전기통신사업자

□ 피규제자에 대한 영향(직접비용 발생하지 않음)

- 본 고시안은 피규제자와 집합건물 관리주체 간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독점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집합 건물 등의 세부 유형을 정하는 것으로,
- 해당 규제로 인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없음
 -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자체에는 특정 장비 구매 또는 설치, 추가 인력 고용, 기타 부대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
 - 또한 건물 전체에 대한 독점적 계약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이 규제를 통해 다른 비독점 사업자들이 반드시 해당 건물에 전기통신회선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 전기통신사업법 38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회선의 대여를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점 계약이 금지될 경우에도 필요시 추가적인 설비투자 없이 다른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
 - 건물의 구조상 독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시 개정안에서 단체독점계약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어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독점계약 하에 있던 집합건물에서 이용자가 타사의 서비스를 설치할 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선 대여 등을 위한 협상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이용자의 선택 및 건물의 특성 등에 따라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

- 아울러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부대 비용은 금지 대상 집합건물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신규 고객 유치 시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고시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 다른 사업자의 독점적 계약을 맺고 있는 집합건물로부터 일부 이용자가 이탈하여 새로 유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출 증가는 고시 개정안의 직접적인 효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 매출 증가의 수준은 서비스 판매 전략이나 이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변화하며, 이용자 이탈이 발생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파급효과이므로 규제비용 관리제 매뉴얼의 규정에 따라 간접효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또한 자사 망으로부터의 이용자 이탈과 함께 타 사업자 망으로부터의 이용자 유입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규제자 집단 전체에 대한 본 개정안의 간접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

□ 피규제자 외 집단에 대한 영향

1) 집합건물 관리주체

- 집합건물 관리주체는 다회선 상품 계약의 계약 당사자로 입주자들에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기업·소상공인에 해당
- 집합건물 관리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으로써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 관리법’ 제2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주체나 관리단 또는 관리인 등이 해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제24조(관리인의 선임)에 의거하여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함

○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나 관리인, 또는 건물주 등 건물관리의 권한을 갖는 자는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 위탁관리업자 내지 전문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

- 이러한 위탁관리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또는 사업자는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주 또는 구분소유주 집단(관리단)을 대신하여 건물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음
- 관리주체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바, 계약 기간 동안에만 건물 관리의 업무를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변해도 통신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체결할 의무도 없음

○ 집합건물 관리주체는 그동안 단체 독점계약을 통해서 다량의 회선을 확보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나 경품을 수령해 온 비공식적 관례가 있으나 본 개정안 시행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게 될 수 있음 (아래 표 참조)

- 다만 이는 피규제자 이외 집단에 대해 발생하는 간접 이익 손실이며,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움

<표 2-8> 통신사별 대표적인 다회선 상품

서비스상품		제공속도	서비스요금	회선수	서비스 혜택 등 내용
KT	인터넷 베이직	최대 500Mbps	33,000원	8회선	- 가장 기본 인터넷 서비스 - 최대 500Mbps 속도 제공
	오피스넷 베이직	최대 500Mbps	44,000원	8회선	- 다수 PC사용 가능 - 고정IP서비스 제공
	구내 인터넷	Shared-100M Shared-1G Dedicated -100M	28,050원/월 46,750원/월 770,440원/월	1:1연결	- 소호 고객 대상 인터넷 접속 서비스 - 고정 ip 제공 등

서비스상품		제공속도	서비스요금	회선수	서비스 혜택 등 내용
SKB SKT	비즈원	100M	24,000원	8회선	- 비즈광랜:IPTV(1:8 방식)
		500M	30,000원	8회선	- 비즈광랜:IPTV(1:8 방식)
		1G	35,000원	8회선	- 비즈광랜:IPTV(1:8 방식)
LGU+	멀티라인	100M	27,500	8회선	- 건물 내 전체 호실에 “인터넷 + IPTV” 1:8 구조로 독점 가입 필수 (상가 제외) - 1회선 서비스 이용료로 최대 8회선까지 사용 (7회선에 대한 서비스이용료 전액 할인)
		500M	33,000	8회선	
		1G	38,500	8회선	
KT skylife	초고속 인터넷	200M	22,000	8회선	- 3년약정 및 TV결합 시 결합가격(서비스요금가) 제공
		500M	27,500	8회선	
		1G	33,000	8회선	
LG HV	플래티넘 기가	1G	40,000원	8회선	- 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 - 설치비, 장비임대료 면제 등
	기가 라이트	500M	38,000원	8회선	
	광랜	160M	33,000원	8회선	
딜라이브	Biz 베이직	100M이상 (광케이블)	57,440원	8회선	- 인터넷 전용회선 - 사은품(상품권, 무료개월)
	Biz 세이브	100M이하 (HFC망)	5,691원	1:1연결	

주 : 각 사업자별로 다회선계약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기재

2)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서비스 이용자

- 집합건물내 전기통신서비스 단체독점계약이 금지되면 복수의 회선을 제공하는 댓가로 받게 되는 할인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 편익이 감소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 이러한 할인율이 온전히 이용자에게 전이되어 왔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할인 또는 경품 등 기타 혜택은 건물관리주체에게 돌아가는 비공식적 관례가 있었으므로 이용자 차원의 편익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독점적 계약을 금지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증가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단가가 하락하거나 상품의 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음
- 이용자는 집합건물 이주 이전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 서비스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반대로 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선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편익 발생
 - 또한 이전에는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받아오던 경품 또는 할인 혜택도 실제 이용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다는 추가적 편익도 존재
 - 통신사별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해지건수 및 할인반환금중에서 서비스 불만, 서비스제공지역이 아닌 경우 등 사유가 다양한 만큼 집합건물의 독점계약에 따른 해지건수 및 할인반환금 현황을 구분해서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규제시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

제 2 절 독점계약 금지대상 건물의 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1. 규제 개요

- 전기통신사업자가 건물주나 관리주체(이하 ‘건물관리주체’라 함)와 인터넷 및 결합상품서비스를 다회선 상품으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독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발생⁸⁾
 -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기존 사용하던 전기통신서비스의 강제 해지로 인한 위약금, 유무선 결합할인 해지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또한, 건물관리주체가 서비스제공이나 영업권한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여하는 등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최근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다회선 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해당 집합건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전기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에 의해 다회선 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8) 구체적인 민원 통계는 앞서 제시된 <표 2-4> 참고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 2018년 국회 지적에 따라 실태점검, 사업자들과의 제도개선 협의를 통해 ‘19. 8월 해지위약금 개선안(기존 사업자 해지위약금 50% 감면, 독점사업자 50% 상당 이용요금 감면) 마련·시행
 - 그러나, 사업자의 협조를 통한 해지위약금 중심의 자율적 개선으로 집합건물에서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건물관리주체가 계약 당사자가 됨에 따라 이용요금 감면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 노출
-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으로 발생하는 선택권 제한, 불공정 경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의3이 신설됨 (‘24. 1. 30. 공포, ’ 24. 7. 31. 시행)⁹⁾
 -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세부유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여 24 .1. 24. ~ 3. 10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제정(안)이 마련

<표 2-9> 독점계약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건물관리주체의 범위) 건물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또는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9) <표 2-6> 참고

현 행	개 정 안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외 유사 입법 사례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건물주와 케이블·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임차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 21.7월)
- FCC는 다세대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망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시행(‘ 22.2월)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건물주와 단계별 또는 독점적 수익을 공유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통신사가 건물주와 맺은 독점 마케팅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
 - * 우리나라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 행정입법 권한이 있는 연방정부의 각 기관은 미국 관보에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안을 게시하여 의견수렴 절차 후 확정

3. 주요 분석 내용

○ 해당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은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과 대동소이¹⁰⁾

- 피규제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전기통신사업자
- 독점계약 행위 금지 자체는 추가 인력, 장비 설치, 직접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피규제자에 대한 해당 고시의 영향으로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피규제자 외 집단에 대한 영향

◆ 집합건물 관리주체

- 집합건물 관리주체는 그동안 단체 독점계약을 통해서 다량의 회선을 확보해 주는 대가로 비공식적인 리베이트나 경품을 수령해 온 비공식적 관례가 있으나 본 개정안 시행시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게 될 수 있음
- 다만 이는 피규제자 이외 집단에 대해 발생하는 간접 이익 손실이며,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움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대한 영향

◆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서비스 이용자

- (편익 감소 효과) 집합건물내 전기통신서비스 단체독점계약이 금지되면 복수의 회선을 제공하는 댓가로 받게 되는 할인율이 줄어들 가능성 존재
- 그러나, 단체계약 할인이 온전히 이용자에게 전이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

10) 해당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은 제2장 1절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 대상 건물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에서 일괄 식별하였으므로 자세한 논의는 1절의 해당 부분을 참고

며, 오히려 독점적 계약 금지시 할인 및 기타 경품이 실제 이용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O (편익 증가 효과) 이용자는 집합건물 이주 이전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 서비스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반대로 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선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편익 발생

- 그러나, 통신사별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해지사유 중 집합건물의 독점계약에 따른 해지건수 및 할인반환금 현황을 구분해서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

제3절 지역 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한시 완화 특례

1. 규제 개요

-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전체 방송 시간 중 일정 비율 이상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
 - 「방송법」 제72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함
 - 이 조항은 독립제작사를 육성하여 국내 방송영상 제작시장 활성화와 프로그램 제작원의 다양성 확보를 정책 목적으로 하며 2016년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규제를 재설계할 때 확정되어 시행되어옴
- 구체적으로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비율은 방송사업자에 따라 차등적이며 구체적 비율은 방송법 시행령 및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
 - 2023년 현재 KBS1은 매 반기 전체 TV 방송 시간의 19% 이상, KBS2는 35% 이상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며, MBC와 SBS는 30%, EBS는 16% 이상을 편성할 의무가 있으며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MBC, SBS와 동일한 30% 이상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요구
- 다만, 본 규제 유예의 대상이 되는 지역 MBC는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20% 이상, 서울 지역 민영방송인 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방송사들은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3.2% 이상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

<표 2-10> 현행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현황(매반기)

구분	KBS1	KBS2	MBC	SBS	EBS	지역 MBC	기타 지방 (지역민방)	중편PP
전체방송 시간	19%↑	35%↑	30%↑	30%↑	16%↑	20%↑	3.2%↑	30%↑

○ 방송사의 일일 전체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 비율 이상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곧 방송사 자체 제작 또는 구매 등 다른 편성 재량권 행사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함

- 의무로 정해진 순수 외주제작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등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해진 지역방송사에게 이는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에 2024년 7월 1일부터 지역방송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2026년 6월 말까지 2년간¹¹⁾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시행

- 해당 특례에 따라 지역 MBC는 6% 포인트, 지역 민영 방송사는 0.6% 포인트를 완화하여 2년의 기간 동안 지역 MBC는 반기별 전체 방송 시간의 14% 이상, 지역 민영 방송사는 2.6% 이상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함¹²⁾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에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서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을 제외시키면

11) 전체 기간은 2년이지만 연도상으로는 2024년(하반기), 2025년, 2026년(상반기)의 3년이 해당되어 비용편익 계산 시에는 3년에 걸친 연간균등순비용을 계산함

12) 방송법은 전체 방송 시간에 대한 의무 편성과 더불어 시청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주시청 시간대에 대해서도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비율을 규정하여 EBS를 제외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주시청 시간대 방송 시간의 10% 이상을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본 규제 완화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은 없음

서 도입됨

○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의 모태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은 1990년 「방송법」 제31조에서 ‘해당 방송국이 아닌 외부의 기관이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통해 신설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는 방송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던 방송영상산업의 수직적 구조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확보와 외주제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는 2000년 통합 방송법 제72조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이때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편성 제한 및 주시청 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도 함께 도입

- 2006년에는 편성 고시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이 개정되었고, 2010년에는 편성 비율의 산정 기간이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되어 사업자들의 편성 자율권을 확대

- 2015년에 이르러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의 대상을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으로 축소하여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순수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그 의무 편성비율을 35% 이내로 규정(방송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 2016년에는 「방송법 시행령」과 편성고시 개정으로 방송사업자 및 채널별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2019년에는 동일한 성격의 방송사업자 즉 종합편성 방송사에게 동일한 규제를 부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 채널(Program Provider, PP)들이 이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

- 주요 방송사들 및 종편 PP들은 의무편성 비율을 상회하는 편성을 해왔으나 몇몇 방송사에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감소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

〈표 2-11〉 외주 및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경과

구분	대상	2000년 (매월)	2001년 (매월)	2002년 (매월)	2003년 (매월)	2005년 (매분기)	2016년 (매반기)	2022년~ (매반기)
전체 시간대 외주 제작	KBS1	22% 이상	~9.30: 24% 이상 10.1~: 26% 이상	28% 이상	30% 이상	24% 이상	순수외주 19% 이상	순수외주 19% 이상
	KBS2					40% 이상	순수외주 35% 이상	순수외주 35% 이상
	EBS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순수외주 16% 이상	순수외주 16% 이상
	MBC, SBS	27% 이상	~9.30: 29% 이상 10.1~: 31% 이상	33% 이상	35% 이상	35% 이상	순수외주 30% 이상	순수외주 30% 이상
	지역 MBC	27% 이상	~9.30: 29% 이상 10.1~: 31% 이상	33% 이상	35% 이상	35% 이상	순수외주 30% 이상	순수외주 20%이상
	기타 지상파 사업자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순수외주 3.2% 이상	순수외주 3.2% 이상
	종편PP	-	-	-	-	-	-	순수외주 30% 이상
전체시간대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18% 이하	18% 이하	20% 이하	21% 이하	21% 6이하	〈삭제〉	〈삭제〉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6% 이상	8%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순수외주 10% 이상 (지상파)	순수외주 10% 이상 (지상파, 종편PP)

- 편성 고시에 따르면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외주제작사가 △작가 △주요 출연자 △주요 스태프와 계약 체결을 담당하거나 △제작 재원의 30% 이상을 조달하거나 △제작비 집행·관리 관련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등 다섯 가지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어야 함
- 서울 MBC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역 MBC의 경우 MBC 본사와 동일하게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30% 이상을 편성해야 했으나, 2022년부터 지역 민영 방송사들(3.2% 이상)과의 규제 형평성 및 지역성 저하를 이유로 20%로 완화
- 본 규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작 주체의 다변화,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의존도 상승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오히려 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우려 발생
 - 외주제작 산업의 외형적 성장으로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외주제작 산업 진흥 정책의 당위성이 약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외주제작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성 구현 및 지역 방송산업 발전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도 존재
- ※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즉, 외주제작사는 2012년 516개에서 2021년 732개 업체로 200여 개 이상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종사자 수 역시 2배 이상 증가하고 전체 매출액 역시 꾸준히 증가 (방송영상 산업백서, 2023)
- OTT 플랫폼 이용확산에 따른 시청행태 변화 및 TV 광고 수익 하락 등으로 인해 지역 방송사들은 재원 악화와 제작 여력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최근 자체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방송들은 정부지원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찬에 의존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공모작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 (한국기자협회, 2024.3.21.)
 - 또한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라는 이유로 지역 방송사들은 유료방송 채널이나 OTT 플랫폼에 비해 더 많은 편성 규제와 제재의 대상임

- 이에 지역방송사에 대한 방송 편성규제를 완화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성 반영과 제작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목적에서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어 자체제작을 촉진하고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의무의 한시적 완화를 도입
- 이는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의 하나이기도 함

3. 주요 분석 내용

가. 직접 편익 산출을 위한 전제

- 본 규제 특례의 직접 적용 대상인 지역방송사는 모두 연간 매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2023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규제 특례에 따라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이 완화되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분량만큼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줄어들어 외주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용이 보전될 수 있음
- 다만, 방송사의 일일 전체 방송 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대체 프로그램의 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분석을 위해서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만큼 증가할 만한 항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함
- 현재 지역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은 ① 수(受)중계 + ② 자체편성으로 구성
- ① 수중계는 지역방송사에서 MBC 본사 또는 SBS의 편성을 그대로 중계하는 것으로, 지역 MBC는 MBC 본사의 편성을, 지역 민영 방송사는 서울 SBS의 편성 중

일부 프로그램을 편성 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중계

※ 「방송법」 제69조 제6항에서는 지역 민영 방송사의 편성 중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과도하게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중계 비율규제가 있음. 이는 민영 방송사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한 지역 민영 방송사가 다른 한 방송사업자 (주로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수중계(Relay)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역 민영 방송사의 정체성을 살린 편성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② 자체편성은 다시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 외주제작, 특수관계사 외주제작, 국내물(외주, 비외주) 구매, 국외물 구매로 구성됨

<표 2-12> 지역방송사의 편성

자 체 편 성 (전체 방송시간의 32~22%)							수 중 계 (전체 방송시간의 68~78% 이내)
제작		외주		구매			
자체 제작	공동 제작	순수 외주	특수 관계사 외주	국내물- 외주	국내물-비 외주	국외물 구매	

주 : 매출액에 따라 구체적인 수중계 제한 비율이 달라짐

○ 지역방송사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실적을 보고할 때 지역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더하여 수중계에 포함되어 있는 MBC 본사(지역 MBC)와 서울 SBS(지역 민영 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시킴

- MBC 본사와 서울 SBS는 대체로 전체 방송 시간의 30% 이상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
- 지역방송사는 방송 송출시 MBC 본사(지역 MBC)와 서울 SBS(지역 민영 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일부를 포함시키고, 방송실시 결과를 보고할 때 이들을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실적에 합산

○ 이때 개별 독립사인 지역 민영 방송사와 달리, MBC 본사의 계열사인 지역 MBC는 자체 편성 의무[수중계 제한]가 없으므로 지역 민영 방송사보다 높은 수준에서 MBC 본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

※ 수중계 제한 규제 자체는 법인 구분이 없는 지역 KBS나 서울 MBC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역 MBC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 MBC에서 서울 MBC 본사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를 수중계로 간주

- 이에 따라 지역 MBC의 경우는 MBC 본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에 상응하여 높은 수준으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편성됨
- 그 결과, 방송실시 결과 보고에서는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자체편성물에 한해 순수 외주제작과 특수관계사 외주 실적을 보고하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순수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음 (표 2-13, 2-15 참조)
- 구체적으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송실시 결과에서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2020-2023년의 기간 동안 지역 MBC는 26.4-32.1%, 지역 민영 방송사는 22-28%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나,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수중계에 포함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지역 MBC는 1.2%, 지역 민영 방송사는 3.4%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MBC는 연도별로 [자체] 순수 외주제작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음¹³⁾

13)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지역 MBC중 MBC 충북의 2사(청주, 충주), MBC 강원 영동의 2사(강릉, 삼척)를 각각 1사로 통합하여 자료를 제시하므로 19개 사가 아닌 17개 사의 자료만 제시

<표 2-13> 지역방송사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평균 편성비율

(단위 : %)

구 분	지역 MBC		지역 민영 방송	
	전체 시간대 (20%↑)	주시청시간대 (10%↑)	전체 시간대 (3.2%↑)	주시청시간대 (10%↑)
2020년	32.1	22.5	28.0	22.6
2021년	31.9	15.4	29.0	20.3
2022년	29.5	19.7	26.6	20.3
2023년	26.4	17.6	22.3	24.9

주 : 괄호 안은 법정 의무 편성 비율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방송실시 결과보고

<표 2-14> 제작원별 편성비율 (2018-2022)

단위(%)

	제작		외주		구매			수중계
	자체 제작	공동 제작	순수 외주	특수 관계사 외주	국내물 구매 -외주	국내물 구매 -비외주	국외물 구매	
MBC본사	52.0	-	34.3	11.1	0.1	0.6	2.0	-
SBS	58.3	-	36.1	5.1	0.0	0.4	0.1	-
지역 MBC	7.8	4.2	1.2	0.4	2.1	0.2	0.2	83.9
지역민방*	15.5	8.0	3.4	0.7	0.9	0.9	0.3	70.3

주 : 지역 민영 방송사의 제작원별 편성비율은 OBS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2019-2023년『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제작원별 편성비율 재구성
(2018-2022 데이터)

○ 수중계는 전체 방송 시간 중 지역방송사가 선택한 시간에 서울 SBS (지역 민영 방송사), 또는 MBC 본사(지역 MBC)의 편성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으로, 수중계 프로그램을 더 편성하더라도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SBS는 네트워크 협정을 통해 전국 지역 민영 방송사를 통해 자사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게 되므로 도달 범위가 넓어져서 광고 수익이 늘어남. 이러한 광

고 수익을 민영방송 네트워크사들에게 송출료의 개념으로 일부 분배하기 때문에 수중계 프로그램을 더 편성하는 경우 오히려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음

- 지역방송사들은 수중계에 포함된 SBS와 MBC 본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량 그대로 편성하지 않고, 해당 방송사의 편성 전략에 따라 필요한 분량을 선택하여 방송

○ 10개 지역 민영 방송사 가운데 OBS 경인 방송의 경우는 서울 SBS와 권역이 겹치는 관계로 지역 민영 방송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SBS의 편성을 수중계하지 않고 자체 편성만 수행함

- 그 결과 자체적인 편성 전략에 따라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실적도 매우 높은 편이라서 (2018-2022년 동안 15%-26%) 의무 편성 비율 0.6% 포인트 완화로 인해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축소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5> 지역방송사 [자체]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평균 편성비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 MBC (17개사)	0.8% (12개사)	0.9% (12개사)	1.9% (13개사)	1.5% (11개사)	0.8% (9개사)
지역민방 (9개사)*	3.9% (8개사)	3.8% (7개사)	3.3% (7개사)	3.7% (9개사)	2.2% (7개사)

주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데이터는 이전 연도 데이터임

자료 : 2019-2023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의무 편성비율 완화 특례에 따르면 지역 MBC는 전체 방송 시간의 6%, 지역 민영 방송사의 경우 전체 방송 시간의 0.6% 만큼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을 줄일 여지가 생김

- 이 경우 감소되는 편성 분량에 상응하는 규모로 지역 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방송사의 전체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줄어드는 순수 외주제작 편성시간에 상응하는 분량만큼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함
- 이는 자체제작, 또는 특수관계자 외주제작이나 구매 등 다른 항목의 편성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임
 - 이때 MBC 본사 또는 SBS의 수중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중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경우 가장 비용 절감 효과가 큼
- 줄어드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대신 상대적으로 분당 비용이 저렴한 ‘구매’ 프로그램을 편성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국내외 프로그램 구매가 증가하면 구매 비용 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순수 외주제작 편성비율 완화로 인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또한 지역방송사가 편성 전략에 따라 스스로 [자체] 순수 외주제작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완화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구매 프로그램의 편성이 늘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지역방송사들은 현재 수중계에 포함되어 있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만 편성하더라도 의무 편성비율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지역 민영 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은 3.2% 이상이지만, 방송실시 결과 보고에 나타난 편성 실적은 20% 이상임; 표 2-10 표 2-13 참조)
 - 다만, 지역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순수 외주제작을 수행하는 것은 편성전략 또는 지역방송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체] 순수 외주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므로 순수 외주제작 의무 비율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필요에 따라 순수 외주제작을 지역방송 자체적으로 수행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지만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용 절감 수준을 추정하여 규제 완화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지역방송사의 규제 완화에 따라 [자체]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일부(지역 민영 방송사) 또는 전량(지역 MBC)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중계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고 편익치를 산정

※ 지역 민영 방송사에 대해서는 수중계 편성 비율 제한이 있으나,¹⁴⁾ 지역 민영 방송사들은 의무 비율에 가깝지만 대체로 평균 약 1% 포인트 정도의 여유를 두고 편성하고 있음. 따라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0.6% 포인트 완화를 모두 수중계 프로그램에서 충당한다고 해도 수중계 비율 제한 위반 여지는 적다고 판단됨

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완화의 직접편익 산출방법

(1) 직접편익 산출을 위한 가정

- 본 연구에서는 한시적 규제 특례로 인한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의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채택
- (가정1) 지역방송사는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이 완화되면 지역방송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시간을 MBC 본사(지역 MBC) 또는 SBS(지역 민영 방송사)의 수중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대체
- 수중계는 일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중계 편성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지역방송사에서 더 편성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중계

14) 2022년 이전에는 지역 민영 방송사의 허가 차수에 따라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1차 민영 방송 4개 사(KNN(부산), 광주방송, TBC(대구), 대전방송)는 수중계 비율이 69% 이내, 2차 민영 방송 3개 사(청주방송, 전주방송, 울산방송)는 71% 이내, 3차 민영 방송사 2개 사(G1(강원), 제주방송)는 77% 이내로 제한됨. 2022년부터는 방송 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수중계 제한 비율이 달라짐

100억 미만	100억~150억 미만	150억~200억 미만	200억~250억 미만	250억~300억 미만	300억~350억 미만	350억~400억 미만	400억 이상
78%↓	76%↓	74%↓	72%↓	71%↓	70%↓	69%↓	68%↓

에 포함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을 줄일 유인은 없음

- 따라서 제작 비용이 발생하는 지역방송사 자체 수행 순수 외주제작은 줄이고 수중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더 편성하는 것을 선택할 유인이 존재

○ 일일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지역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 분량만큼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함

- 2018-2022년 기간 동안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유형별 제작 비용을 살펴보면 자체 제작(공동제작 포함) 또는 구매가 지역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비해 분당 구매/제작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이 줄어들면 이들 유형의 프로그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표 2-16>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유형별 평균 제작/구매 비용

(단위: 천원/분, 반올림)

	자체 제작	공동 제작	순수 외주	특수 관계자 외주	국내 외주 구매	국내 비외주 구매	국외물 구매	평균
지역 MBC	11	8	14	11	5	11	7	10
지역 민영방송사	18	7	44	192	14	4	19	18

주 :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수록 데이터는 이전 연도 데이터임

자료 : 2019-2023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실제로 2018-2022년의 기간 동안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시간의 증감을 살펴보면 2021년 전후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이 완화된 지역 MBC의 경우 수중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민영 방송사의 구매가 늘어난 사례도 보임
- 반면, 지역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이 늘어나면 자체 편성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므로 자체 편성의 반대 급부인 수중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사례도 존재

<표 2-17> 지역방송사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시간 변화(2020-2022)

(단위: 분)

방송사	기간	프로그램 유형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	국내 외주 구매	국내 비외주 구매	국외물 구매	수중계
지역 MBC	2018-2019	15,860	-19,305	6,435	30,270	50,915	-1,030	8,925	-36,370
	2019-2020	-16,152	-60,950	74,310	-23,485	49,375	3,535	-9,835	-100,367
	2020-2021	-38,007	-27,710	-28,150	-705	-22,795	1,760	-7,785	25,005
	2021-2022	22,029	27,570	-57,286	2,735	-106,900	11,020	-10,710	46,568
	2018-2019	-58,300	105,143	3,151	10,215	9,232	-2,229	429	134,622
지역 민방	2019-2020	5,357	-15,699	-23,103	5,421	727	11,592	-6,113	-60,695
	2020-2021	-2,742	-8,468	15,953	10,354	-8,762	-12,529	-7,481	-14,069
	2021-2022	-1,768	-2,032	-60,018	3,981	5,914	8,141	2,185	-33,531

자료 : 2021-202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 재구성

- 그러나 <표 2-17>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완화에 따른 다른 유형 프로그램 제작/구매에 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추가 편성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을 구매 또는 제작하는 것보다는 수중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 재정 부담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O (가정2) OBS는 규제 완화에 따라 순수 외주제작을 줄일 유인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민영 방송 9개 사만 분석 대상으로 함

- OBS는 SBS와 방송권역이 겹치기 때문에 SBS 편성을 수중계하는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전체 방송 시간을 자체 편성만으로 운영함

- 또한 전 시간대를 자체 편성으로 운영하여 순수 외주제작 실적 역시 다른 지역 민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2018-2022년 동안 평균 15-26%)

- 따라서 OBS는 지역 민영 방송사에 대한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0.6% 완화

특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순수 외주제작 편성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며 의무 비율 완화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지역 민영 방송사의 편익 분석에서 OBS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지역 민영 방송사만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 단,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는 제작원별 연간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비용 자료를 10개 지역 민영 방송사의 평균으로 제시하므로 제작 및 구매 비용과 관련된 수치에는 OBS의 자료를 포함

(2) 직접편익 산출 방법

- 본 규제의 직접적인 피규제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방송사에게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지역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을 해당 연도의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추출

- SBS와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한 지역 민영 방송 9개사와 서울 MBC 본사의 계열사인 지역 MBC들은 각각 적용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도 다르고(지역 MBC 20%, 지역 민영 방송사 3.2%), 완화되는 의무 편성 비율 역시 지역 MBC는 전체 방송 시간의 6%, 지역 민영 방송사는 전체 방송 시간의 0.6%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

-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완화 때문에 지역방송사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의 규모는 완화되는 지역방송사 [자체]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시간(분)에 평균 제작비용을 곱하여 산출

※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의 완화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 =
의무 비율 완화에 따라 감소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시간(분)
×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분당 평균 비용

○ 본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의무 편성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로, 연도상으로는 2024(하반기), 2025, 2026년 (상반기)의 3개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 절감을 계산해야 함

(3) 규제 완화로 인한 순수 외주제작 대체 규모

○ (지역 MBC) 2020-2023년 방송실시 결과 보고에 나타나는 지역 MBC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이행 실적은 평균 약 26%로, 여기에는 지역 MBC가 자체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수중계에 포함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됨

- 규제 완화로 줄어드는 의무 편성 비율은 6% 포인트이지만, 실제 지역 MBC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대체로 약 1.2%에 불과 (2019-2023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수중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편성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중계에 포함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줄일 유인은 없음
- 따라서 규제 완화 시 지역 MBC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량 축소하고 이를 수중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때 최대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 MBC는 수중계 비율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민영 방송사에 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MBC 본사의 편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이렇게 대체되는 평균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1.2%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03,570 분에 해당 (지역 MBC 1사의 연간 총 방송 시간 454,253분 $\times$ 1.2% $\times$ 19개 사)

○ (지역 민영 방송) 지역 민영 방송사들이 방송실시 결과 보고에 제출하는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 비율 이행 실적은 평균 약 23%이며(2020-2023 방송 실시결과 보

고). 여기에는 지역 민영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SBS 수중계에 포함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됨

-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 민영 방송사들이 줄일 수 있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0.6% 포인트이며, 지역 민영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 시간의 약 3.4% 정도임 (2019-2023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수중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 시 지역 민영 방송사들은 완화되는 비율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전량을 모두 수중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큼
- 규제 완화로 줄일 수 있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0.6%를 방송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3,805분에 해당 (지역 민영 방송 1사의 연간 총 방송 시간 440,830분 $\times$ 0.6% $\times$ 9개 사)

(4) 직접편익 산출 세부 내용 및 결과

○ 1차년도 비용절감 효과

- 2019-2023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MBC 19개 사는 평균 1.2%, 지역 민영 방송 9개 사는 평균 3.4% 정도의 비율로 자체적으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추정할 때, 규제 완화에 따라 지역 MBC는 1.2% 전량을, 지역 민영 방송사는 0.6% 포인트에 해당하는 분량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줄일 수 있음
-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비율 완화로 1차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효과는 지역 MBC 19개사 약 1,450백만원, 9개 지역 민영 방송사 약 1,047백만원으로 연간 총 약 2,497백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규제 완화가 1차년도에는 하반기(7월)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반분한 약 1,249백만 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때 제작비는 천원

단위로 반올림함)

* 지역 MBC의 비용 절감 :

$$\begin{aligned} & \text{지역 MBC에서 감소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시간(분)} \\ & \times \text{지역 MBC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분당 평균 제작비} \\ & = 103,570\text{분} \times 14,000\text{원} \\ & = 1,449,980,000 \text{ 원} \end{aligned}$$

* 지역 민영 방송사의 비용 절감 :

$$\begin{aligned} & \text{지역민방에서 감소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시간(분)} \\ & \times \text{지역민방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분당 평균 제작비} \\ & = 23,805\text{분} \times 44,000\text{원} \\ & = 1,047,420,000 \text{ 원} \end{aligned}$$

* 지역 MBC와 지역 민영 방송사(9개사)의 연간 총 비용절감

$$= 1,449,980,000 + 1,047,420,000 = 2,497,400,000 \text{ 원}$$

* 지역 MBC와 지역 민영 방송사(9개사)의 1차년도(하반기) 비용절감

$$= 2,497,400,000 \div 2 = 1,248,700,000 \text{ 원}$$

○ 2차년도 비용절감 효과

- 2차년도에도 지역 MBC는 1.2%, 지역 민영 방송 9개사는 3.4% 정도로 자체적으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가정
-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MBC 19개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1.2% 전량을 수증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지역 민영 방송 9개사 역시 0.6% 정도를 수증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역 방송사들에게 약 2,497백만 원의 비용 절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2,390백만 원임
- 2차년도는 1차년도와 달리 반기가 아닌 한 해 동안 규제 완화가 적용되므로 비용 절감 효과가 1차년도에 비해 크게 나타남

$$\begin{aligned}
 & * \text{2차년도 비용절감 현재가치(연간할인을 4.5\% 적용, 할인계수는 0.9569)}^{15)} \\
 & = 2,497,400,000 \times 0.9569 = 2,389,856,459 \text{ 원}
 \end{aligned}$$

○ 3차년도 비용절감 효과

- 3차년도에도 지역 MBC는 1.2%, 지역 민영 방송 9개 사는 3.4% 정도로 자체적으로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가정
- 지역 MBC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1.2% 전량을 수증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지역 민영 방송사 역시 자체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3.4% 중 0.6% 포인트에 상응하는 분량을 수증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제작비용을 절감하면 2차년도와 같이 연간 약 2,497백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한시적 규제 완화가 2026년 6월말까지인 관계로, 3차년도에는 2차년도와 달리 규제 완화가 상반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반분한 약 1,249백만 원의 비용절감이 3차년도에 발생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할인계수를 적용하여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143백만 원 정도임

$$\begin{aligned}
 & * \text{3차년도 비용절감 현재가치 (연간할인을 4.5\%, 3차년도 할인계수는 0.9157)}^{16)} \\
 & = (2,497,400,000 \div 2) \times 0.9157 = 1,143,471,990 \text{ 원}
 \end{aligned}$$

15) [부록 4] 비용편익 연균계산표의 2차년도 할인계수

16) [부록 4] 비용편익 연균계산표의 3차년도 할인계수

○ 규제완화 기간 동안 총 비용절감

- 규제완화 기간 동안(2024년 하반기, 2025년, 2026년 상반기) 총 비용절감의 규모(현재가치)는 약 4,782백만 원

* 규제완화 기간 동안 비용절감 효과(현재가치) :

$$\begin{aligned} & * 1,248,700,000 \text{ (1차년도 하반기)} + 2,389,856,459 \text{ (2차년도)} \\ & \quad + 1,143,471,990 \text{ (3차년도 상반기)} = 4,782,028,449 \text{ 원} \end{aligned}$$

○ 이 결과는 19개 지역 MBC와 OBS를 제외한 9개 지역 민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시간을 모두 수중계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임

- 지역방송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을 줄이고 그에 상응하는 분량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중계 프로그램을 더 편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을 방송 설비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제작 인력 고용 또는 인력 교육 등 자체제작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비용 절감의 효과는 지역방송사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 시청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것임

제 3 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중 규제 분류

제 1 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 현황

- 규제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규제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가 소관하는 규제 조항들의 전반적 특징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 필요에 따라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법령에 포함된 규제 조항들을 분류하고, 그 전반적인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규제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법령과 규제 조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정보 포털(<http://www.better.go.kr>)에 게재된 부처별 규제정보를 활용하였음
 - 2024년 8월 현재 규제정보 포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을 총 11개로 열거하고 각 법과 하위 법령에서 규제라고 판단된 조항들을 게재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1개 법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법」, 「전파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됨
 - 해당 포털에서는 법 단계의 규제 조항뿐만 아니라, 각 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중에 포함된 규제 조항도 표시하여 제공하고 있음
- 2024년 10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¹⁷⁾ 11개 법과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

정규칙을 모두 살펴본 결과, 규제정보 포털에 게재된 규제 조항은 총 501개로 집계됨¹⁸⁾

- 11개 법과 하위 법령 중 30개 이상의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6개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해당됨

<표 3-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제 조항 현황

구 분 (하위 법령 포함)	규제 조항 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
2. 방송문화진흥회법	2
3. 방송법	219
4. 전파법	15
5. 전기통신사업법	58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9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9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30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48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
총 계	501

자료 : 규제정보 포털(<http://www.better.go.kr>)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 재구성

주 : 규제정보 포털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제시 순서를 그대로 따름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 조항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되었음

18) 2024년 11월 21일 기준 규제정보 포털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 중 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된 규제들 및 중복 게시된 조항들을 제외한 숫자임

- 규제 조항이 가장 많은 것은 방송법 및 하위 법령으로, 총 219개의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 총 501개 중 약 44%를 차지
- 방송법 다음으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이 69개(14%),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이 58개(12%)의 순서이지만, 방송법 법령군에 비해 규제 조항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분류 및 분석

1. 규제 분류 방법 및 분류 틀

1) 기존 연구의 분류 틀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2016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의 분류를 시도한 기존 연구(이광훈·김광식, 2016)를 참조하고 해당 연구에서 활용된 분류 틀을 수정하여 적용
- 기존 연구(이광훈·김광식, 2016)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규제 조항들을 여러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 항목별로 규제 부담 지수를 부여하여 부담의 정도를 계량화하여 제시
 -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에서 채택한 규제 조항 분류의 기준은 규제 성격, 규제 강도, 파급효과, 개선 정도, 일몰설정 및 네거티브[규제방식]의 여섯 가지임
 - 각 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하위 분류 항목을 적용하여 각 기준 항목마다 2-4개의 카테고리를 두고 보다 심층적으로 규제를 분석하고자 시도함
 - 해당 연구에서는 일단 기준 항목들을 적용하여 규제를 분류한 후, 항목별로 규제 강도를 계량화하여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규제 부담 지수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의 부담 정도를 정량화하여 파악하고자 한 것임
- 본 연구는 이광훈·김광식(2016)의 규제 틀 일부를 적용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들을 분류하고 있으나, 규제의 분류 자체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별도의 계량화는 시도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 분류 항목별로 구체적 수치를 부여하여 규제의 부담 정도를 계량화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가 규제 조항들의 체계적 분류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들의 전반적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는 기초적 연구이기 때문임
- 또한 어떤 분류 항목에 어느 정도의 규제 부담 점수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 부담 점수를 부과한 결과 조항별로 규제 부담 지수의 차이가 나더라도 그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임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별도의 계량화된 수치를 부여하여 규제 조항들의 규제 부담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본 연구는 규제 조항들의 규제 부담 정도를 계량화하는 접근은 시도하지 않음

〈표 3-2〉 기존 연구의 규제 조항 분류 기준

규제 분류		규제 내용
규제성격	경제적 규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가격 결정, 경쟁 조건, 시장 진입 및 시장 퇴출 등과 같은 시장에 관한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
	사회적 규제	보건, 안전, 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규제
	행정적 규제	행정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수되는 절차, 요식행위, 서류작성 등과 관련된 규제
규제강도	사전승인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동의, 기타1
	투입기준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기타2
	성과기준	결정,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기타3
	정보제공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 금지, 기타4
과급효과	전국민	규제의 과급효과가 전국민에게 미치는 경우
	해당 분야 전체	해당 과학기술 분야 전체를 규제하는 경우
	개별 피규제자	특정 개개인이나 단체가 규제대상인 경우
개선정도	대폭	규제의 모범이 법률인 경우
	중폭	규제의 모범이 시행령인 경우
	소폭	규제의 모범이 시행규칙 고시 등인 경우
일몰여부	효력 상실형[일몰형]	일몰 기한 도래 시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방식
	재검토행	주기적으로 일몰 기한 도래 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했어 존속·개선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미설정	일몰 방식이 설정되지 않은 규제인 경우
네거티브	네거티브	특정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다른 행위는 허용하는 방식
	포지티브	법령 등의 형태로 특정되거나 규정된 행위만 허용되며 나머지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

자료 : 이광훈, 김권식 (2016)의 규제 부담 지수 분류표 재구성

2) 본 연구의 규제 분류 틀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이광훈·김광식, 2016)에 사용되었던 규제 분류의 틀을 일부 활용하였으나, 일부 항목은 활용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추가·수정한 항목도 있음
- 분류 항목 중 규제의 성격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의 삼분류를 적용하였음
 - 경제적 규제는 시장진입의 허가, 면허, 승인 및 퇴출, 설비나 재원의 확인, 검사, 증명, 또는 서비스나 거래의 결과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벌 등, 피규제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부담으로 느끼거나 비용이 발생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규제의 경우 보건, 안전, 환경 및 사회적 통합 또는 시청자 복지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로, 경제적 규제에 비해서는 다소 추상적인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음
 - 행정적 규제의 경우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요식행위, 서류작성에 관련된 규제이므로 피규제자에게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그 강도는 경제적 규제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절차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다만, 행정적 규제의 경우 조항의 내용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가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업일 수도 있지만, 행정 부처가 수행하는 어떤 행위나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담당 부처나 기관이 되는 경우도 있음
-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규제강도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음
 - 기존 연구에서 규제강도 항목은 사전승인, 투입기준, 성과기준, 정보제공의 네 가

지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 세부 항목의 규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분류가 뜻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서로 다른 항목 간에 중첩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특히 규제강도의 하위 분류 항목 가운데 정보제공의 경우는 사전승인, 투입기준, 성과기준 등의 조항에서도 동시에 규정될 수 있어서 별도의 분류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가령, 정보제공의 규제 내용 중 ‘기준설정’은 정보제공의 세부 규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피규제자로 하여금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된 기준설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전승인이나 투입기준, 성과기준 등을 판단하는 조항에서도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준설정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어 분류가 애매한 경우가 빈번

- 다만, 규제강도의 세부 항목 중 사전승인, 투입기준, 성과기준 등은 대체로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기준설정 외에 정보제공의 다른 규제 내용들, 가령, 신고, 보고, 통지, 제출의 의무 등은 행정적 규제의 성격이 뚜렷하므로, 규제강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경제적 및 행정적 규제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 규제의 방식과 관련하여 이광훈, 김권식(2016)의 분류에서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방식의 이분법적인 분류를 적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규제 방식 외에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별도로 분류함

-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관할 규제 조항의 분류 작업 중 다수의 조항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규제 방식이 하나의 조항에 모두 포함된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가령, 한 조항 내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을 규정하면서 일부에서는 ‘~을 아니한다, 금지한다’ 등의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동일한 조항의 다른 부분에서는 ‘~을 해야한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규제관리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제 조항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인해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인 피규제자에게 추가 인력 고용, 설비 구매, 또는 특정 조치의 수행 등 직접적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규제 비용 발생 여부를 표기하였음

- 기존 연구에서는 규제 비용 발생 여부 대신 ‘과급효과’ 라고 명명한 항목에서 삼분법적인 분류, 즉, 전 국민, 해당 분야 전체, 개별 피규제자의 분류를 사용하여 해당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 항목을 채택하지 않음

-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직접적인 피규제자 외에는 대개 서비스 이용자, 소비자 또는 국민 전체가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과급효과는 대체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정성적 편익이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규제자 외 영향을 받는 집단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과급효과는 따로 제시하지는 않으며, 그 대신, 규제관리제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 조항들을 분류한 결과를 제시함

○ 기존 연구에서 ‘개선정도’ 라는 명칭으로 규제 개선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항목과 비슷하게 본 연구에서는 ‘개선의 용이도’ 라는 명칭으로 규제 항목을 적용

- 기존 연구의 ‘개선정도’ 항목은 구체적으로, 규제의 제정이나 개정 시 해당 규제 조항의 모법이 법률인 경우는 그 개선 정도를 ‘대폭’ 으로, 시행령이면 ‘중폭’,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소폭’ 으로 간주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도 역시 동일한 분류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해당 규제의 모법이 법인지 아니면 하위 법령인지에 따라 규제 개정의 용이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에 가까우므로, 보다 직관적으로 ‘규제 개선의 용이도’ 로 수정 명명하였음

○ 한편, ‘일몰여부’ 라고 명명한 규제일몰제의 분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효력 상실형, 재검토행, 미설정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피규제

자가 느끼는 규제 부담의 정도는 미설정형> 재검토행> 효력상실형의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성격, 규제 개선의 용이도, 규제의 방식, 규제 비용의 발생 여부 및 규제 일몰 방식을 분류 항목으로 채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규제 분류의 틀을 수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들의 분류에 적용함

- 각 세부 항목은 규제 개선의 용이성 내지는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기준으로, 규제 부담이 높다고 평가되는 항목에서 낮은 항목의 순서로 배열하였음
- 이 분류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 501개의 분류 결과는 부록에 별도로 수록하였음

〈표 3-3〉 본 연구의 규제 조항 분류 기준

규제 분류 항목		내용
규제 개선의 용이도	법	국회에서 제정되므로 개정이 가장 어려움
	시행령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 명령
	시행규칙	행정 각 부처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 명령
	행정규칙	행정기관 내부룰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며 개정이 상대적으로 쉬움
규제의 성격	경제적	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가격 결정, 경쟁 조건, 시장 진입 및 퇴출 등을 통제하는 규제
	사회적	보건, 안전, 환경, 사회적 통합, 개인정보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행정적	그 목적과 내용이 주로 행정 절차나 의무, 기준 등을 규정하는 규제
규제의 방식	포지티브	허용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나머지는 금지하거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행동을 요구하는 방식
	혼합	한 조항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이 혼재하는 방식
	네거티브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
규제일몰 설정여부	미설정형	규제 일몰 기한이 설정되지 않음
	재검토형	규제 일몰 기한 도래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
	효력상실행	규제 일몰 기한 도래 시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
규제비용 발생여부	있음	규제 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피규제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없음	규제 시행으로 인해 해당 규제의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분류 결과

1) 규제 개선 용이도 기준 분류 결과

○ 규제 개선의 용이도는 법령 체계에서 해당 조항의 모법이 차지하는 지위와 직결된 것으로, 상위 법령인 법률이 가장 개선의 부담이 크며, 다음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규칙의 순서라고 볼 수 있음

- 입법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령 체계에서는 상위 법령일수록 포괄적·보편적 가치를 규율하며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반면, 하위 법령으로 내려갈수록 개별적 가치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거나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상위 법령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과 기준들을 담고 있음
- 법률[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체계 자구 심사 및 본회의의 표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에 포함된 규제 조항은 그 제·개정이 가장 어려움
- 시행령은 어떤 법률의 내용들을 국회에서 모두 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 시행령(대통령령)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법안을 처리하므로 의사 결정의 속도가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며, 규제개선 역시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음
-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무총리나 각 부처의 장이 제정하기 때문에 규제의 개선이 시행령보다 더 용이함
-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조직이나 업무 처리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으로 훈령, 지시, 예규, 고시 등이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제외하면 행정기관 내에서 제정하는 행정규칙이 가장 규제개선의 부담이 낮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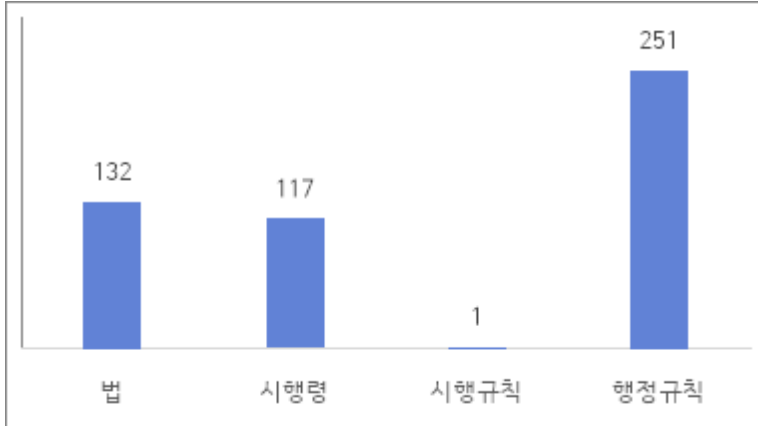
○ 분류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 501개 가운데 법 단위의 규제 조항은 132개였으며, 시행령은 117개,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은 252개로, 규제개선의 부담이 가장 낮은 행정규칙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

- 법이나 시행령에 비해 행정규칙 형태의 규제 조항이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수준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그 세부 사항을 하위

단계인 행정규칙을 통해 규정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임

- 동시에 이 결과는 향후 행정규칙 단계에서 규제 개혁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

[그림 3-1] 규제 개선의 용이도에 따른 구분



○ 분석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1개 법령군(群) 가운데 「방송법」과 그 하위 법령은 행정규칙 단계의 규제 조항이 다른 법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특징이 있음

- 해당 법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조항 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법」은 10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은 10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두 법률 사이에 큰 차이는 없으나, 규제 조항의 수 측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하위 법령이 「방송법」 법령군에 비해 훨씬 적음 (「방송법」 법령군 219개 대비 「전기통신사업법」 법령군 58개)
- 이러한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분장에 따라 두 법을 구성하는 전체 조항의 수는 비슷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추정됨

<표 3-4> 법령군별 규제 개선의 용이도 분류

구 분 (조항 수)	법	시행령	시행 규칙	행정 규칙	규제 조항 합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6)	21	17	1	9	48
2. 방송문화진흥회법 (16)	1	1			2
3. 방송법 (109)	32	34		153	219
4. 전파법 (93)	5	8		2	15
5. 전기통신사업법 (104)	15	10		33	58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43)	28	31		10	69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0)	1				1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8)	2	2		5	9
9.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44)	16	6		8	30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한 법률 (22)	10	7		31	48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8)	1	1			2
합 계	132	117	1	251	501

주 : 1) 규제정보 포털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제시 순서를 따름

2)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법률에 포함된 조항의 수를 나타냄

2) 규제의 성격 기준 분류 결과

○ 규제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해서 규제의 집행 방식, 대상이나 효과, 강도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의 성격을 그 목적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행정적 규제로 분류함

- 경제적 규제는 시장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제를 지칭하

며, 시장의 실패를 막고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이광훈·김권식, 2016)에서 ‘규제 강도’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중 정보제공을 제외한 시장진입, 투입기준, 성과기준과 관련된 규제 조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규제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불법 정보의 전송금지처럼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 건강, 환경,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규제를 의미함
- 행정적 규제는 행정 절차와 운영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로, 서류제출이나 어떤 집행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조항들을 지칭하며, 기존 연구에서 규제 강도 항목 중 정보제출에 해당하는 규제 조항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체계적 분류를 위해서는 조항별로 하나의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규제 조항 안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성격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도 빈번함

- 가령, 지역방송의 수증계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제의 경우, 지역성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사회적 규제로 간주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로도 볼 수 있음
- 이러한 규제 성격의 혼재는 특히 하나의 조항 안에 규제의 목적과 개요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조항의 후반 부에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한 절차나 기준이 서술되는 경우 자주 발생함

○ 법적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법령의 근본적 성격상, 대부분의 규제 조항은 어떤 형태로든 개인과 단체의 활동을 특정 기준에 따라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행정적 규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하나 이상의 규제의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특히 사회적, 경제

적 성격의 규제에 행정적 성격의 규제 내용이 혼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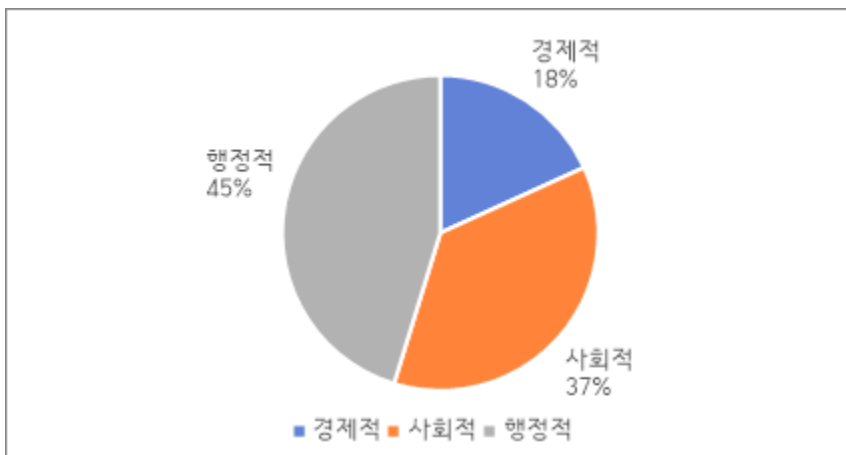
-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드물긴 하지만 행정적 성격보다는 주로 사회적, 경제적 성격의 규제로 구성된 조항들도 있었음
- 구체적으로, 규제의 성격이 혼재된 것으로 분류된 206개의 조항 가운데 약 15% 정도(31개)가 여기에 해당

○ 본 연구에서는 규제 조항의 체계적 분류 및 분석의 명료성을 위해 복수의 규제 성격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명칭 및 제1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분류 하나를 채택하였음

- 다만, [부록 5]에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규제가 혼재된 다원적 조항인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 제시함

○ 이상의 원칙에 따라 조항을 가장 잘 대표하는 규제 성격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을 분류한 결과, 501개의 규제 조항 중 절반에 가까운 227개 (45%)의 조항들이 행정적 규제로 분류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규제 184개> 경제적 규제 90개의 순서임

[그림 3-2] 규제 성격에 따른 분류



- 이처럼 행정적 규제가 많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특성상 다소 추상적인 수밖에 없는 법 단위의 규제에 대해 구체적 시행 절차와 방안 등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행정규칙들이 대개 행정적 규제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문화정체성 등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는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법은 다른 법에 비해 사회적 성격의 규제가 유달리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법령군별 규제 성격 분류

구 분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15	29
2. 방송문화진흥회법		2	
3. 방송법	42	127	50
4. 전파법	4		11
5. 전기통신사업법	8	10	40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2	24	34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	3	4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3		17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6	1	41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	
합 계	90	184	227

주 : 규제정보 포털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제시 순서를 따름

- 한편, 분석 결과 2개 이상의 규제 성격이 한 조항 안에 혼재된 것으로 분류된 조항은 전체 501개 조항 중 206개에 달함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1개 법령군 중 30개 이상의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6

개 법령군을 살펴본 결과, 「방송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제 성격이 혼재된 조항들이 가장 많았으며 (91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48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8개)이 그 뒤를 이음

<표 3-6> 상위 6개 법령군의 규제 성격 혼재 조항

구 분	규제 성격 혼재 조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5 (17%)
방송법	90 (41%)
전기통신사업법	16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 (5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6 (6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 (2%)
합 계	206

주 : 1) 규제 조항이 30개 이상인 상위 6개 법령군만을 대상으로 함

2) 괄호 안은 각 법 및 하위 법령에 포함된 규제 조항의 총수 대비 규제 성격이 혼재된 규제 조항의 비율임

- 규제 조항의 모법에 따라 규제의 성격이 혼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법과 시행령 단계에서 규제의 성격이 혼재된 조항이 각각 75건(36%), 71건 (34%) 나타났으며,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의 경우 60건(29%)에 달하여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모법에 따른 규제 성격 혼재 정도

법	시행령	행정규칙	시행규칙
75 (36%)	71 (34%)	59 (29%)	1 (0%)

주 : 괄호 안은 각 모법 단계별 규제 조항의 총수 대비 규제 성격이 혼재된 규제 조항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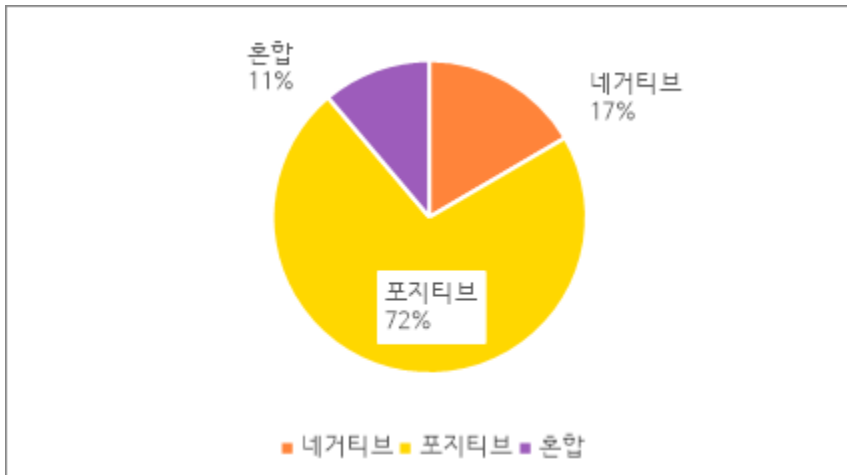
3) 규제의 방식 기준 분류 결과

- 규제의 방식은 크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에는 이 두 가지 규제 방식이 혼재된 조항들도 존재함
- 네거티브 규제의 특징은 금지하는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며, 그 외 열거되지 않은 행위들은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간단하며 피규제자의 자율성도 더 많이 보장됨
 -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는 특히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혁신적 시도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 관련 금지 규정만 명시하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됨
 - 네거티브 규제의 개선은 불필요한 금지 목록만 축소하면 되기 때문에 규제 개선 역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행위만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금지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며,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음
 -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면 규제 개선시 새롭게 허용하는 행위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허용 목록을 수정해야 하므로 정책 변경의 폭이 클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와 행정비용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혼합방식은 하나의 조항에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 설계와 관리는 복잡하지만, 규제개선 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이 혼재된 규제 조항에서는 일부만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합방식의 규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부담이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중간이라고 분류함

○ 규제의 방식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제 조항들을 분류한 결과 전체 501개의 조항 중 절반 이상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501개의 규제 조항 중 포지티브 방식은 362개(72%)이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는 17%인 83개에 불과하고 두 방식이 혼재된 규제 조항은 이보다 더 적은 56개(11%)였음

[그림 3-3] 규제 방식에 따른 분류



○ 규제 조항이 30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과 그 하위 법령에 포함된 규제 조항의 규제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이 69개 규제 조항 중 93%에 달하는 64개의 조항이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6개 법령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58개의 규제 조항 중 52개 (90%)가 포지티브 방식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 48개의 규제 조항 중 39개 (81%)가 포지티브 방식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이 뒤를 잇고 있음

- 규제 조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방송법」법령군의 경우, 219개 규제 조항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3개 (56%)의 조항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포지티브 규제 조항의 수는 가장 많음
- 그러나, 각 법령군에서 전체 규제 조항 중 포지티브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방송법」 및 그 하위 법령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조항 비중 자체는 오히려 나머지 다섯 개 법령군에 비해 낮음
- 다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혼재된 조항은 「방송법」과 그 하위 법령이 다른 법령군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표 3-8〉 상위 6개 법령군의 규제 방식

구 분 (하위 법령 포함)	네거티브	포지티브	혼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15%)	36 (75%)	5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 (10%)	39 (81%)	4 (8%)
방송법	54 (25%)	123 (56%)	42 (19%)
전기통신사업법	5 (9%)	52 (90%)	1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7%)	64 (9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6 (20%)	22 (73%)	2 (7%)

4) 규제일몰제 기준 분류 결과

○ 규제일몰제(Sunset Clause or Sunset Law)는 규제의 시한을 해가 지는 것에 비유하여 특정 규제의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설계된 제도나 법적 장치를 의미

-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각의 규제에 대해 그 유효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놓는 것임
 - 규제일몰제를 활용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필요해졌거나 구시대적인 규제를 자동으로 정리함으로써 규제의 시의성과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규제일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사전에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한 규제가 성급하게 폐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
 - 아울러 규제일몰제가 초래하는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은 장기적 사업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규제일몰제를 그 적용 방식에 따라 미설정, 재검토행, 효력상실형으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제 조항을 분류하였음
- 효력상실형은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규제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적 검토 없이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자동 종료형 일몰제라고도 부를 수 있음
 - 재검토행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해당 규제의 성과와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규제의 지속, 수정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함
 - 미설정은 말 그대로 조항 내에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합한 방식이지만, 반대로 일몰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유지시킬 위험도 존재
 - 이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규제의 효력이 종료되는 조건부 일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 규제의 내용에 따라 규제일몰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규제관리자나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폐기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규제의 부담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미설정형의 경우 해당 규제가 기한 없이 지속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규제자에게는 가장 규제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판단됨
- 재검토행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기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규제 부담의 측면에서는 효력상실형과 미설정형의 중간 단계로 간주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일몰제와 관련하여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행을 아래와 같이 비교 정리하였는데, 효력상실형은 재검토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규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력상실형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표 3-9>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행의 비교

	효력상실형	재검토행
유사점	o 일몰기한 도래시 규제존속 여부 재검토	o 일몰기한 도래시 규제존속 여부 재검토
차이점	o 규제존속 필요성 입증 실패시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효력상실	o 규제존속 필요성 입증 실패시 별도의 폐지절차 필요
장단점	o 규제감축에 보다 간편 o 너무 이상적이라 적용가능한 규제범위가 협소	o 규제감축을 위해 폐지절차 필요 o 보다 현실적인 제도라서 대부분의 규제에 적용 가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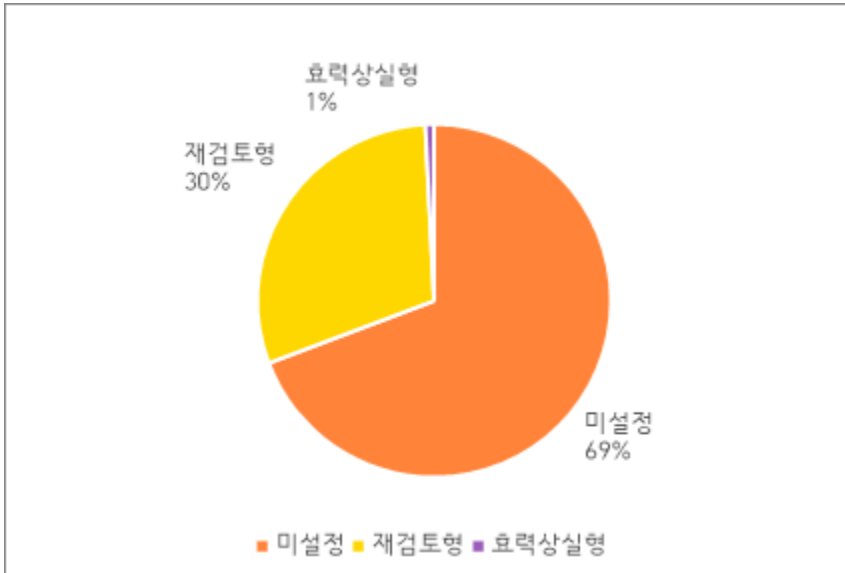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 501개를 대상으로 일몰 형식을 분류해 본 결과 예측한 바와 같이 효력상실형을 채택한 규제조항은 4개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미설정형으로 조문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전체 501개의 조항 중 69%에 달하는 347개가 일몰 미설정이며, 정해진 기간이 도래하면 별도의 검토 없이 규제가 자연 폐기되는 방식의 효력상실형이 적용된 규제 조항은 1% (4개)에 불과하였음
- 규제의 존속을 결정하는 평가가 전제되는 재검토행을 채택한 규제 조항은 501개

의 규제 조항 중 30% (150개)로 나타남

- 모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검토형 규제 조항은 모두 행정규칙이었으며, 이는 규제 시행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음

[그림 3-4] 규제일몰 방식에 따른 분류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중 규제 조항이 30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상위 6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법령군은 58개의 규제 조항 중 57%에 달하는 33개 조항에서 재검토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법령군은 48개의 규제 조항 중에서 31개(65%)가 재검토형을 채택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줌

- 나머지 4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은 미설정 비율이 70% 이상으로, 대체로 규제 일몰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중 규제 조항이 가장 많은 「방송법」 및 하위 법령은 219개의 규제 조항 중 74%인 162개의 조항이 미설정형이며, 재검토형을 채택한 규제 조항은 25%인 55개임

<표 3-10> 상위 6개 법령군의 규제일몰방식 분류 결과

법 령	미설정	재검토형	효력상실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	9	
방송법	162	55	2
전기통신사업법	25	3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9	1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2	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5	3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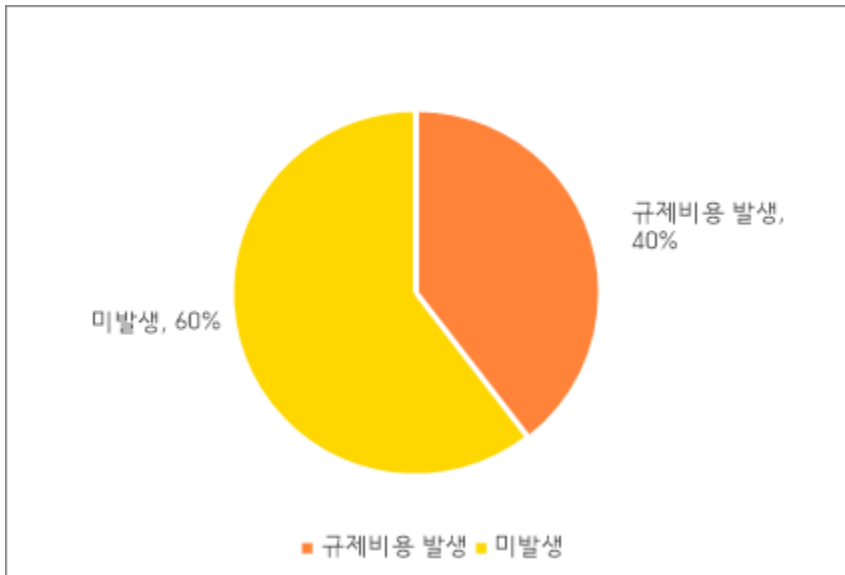
5) 규제비용 발생 기준 분류 결과

- 규제관리제는 특정 규제가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핵심으로, 이는 규제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임
-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 501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60%)에 해당하는 규제 조항이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었음
- 규제의 시행이 피규제자에게 추가 인력의 고용, 설비 구매, 특정 조치의 수행 등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판단되는 규제 조항은 501개의 조항 중 198개로, 조사 대상 규제 조항의 40%에 해당

-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3개의 조항은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그림 3-5] 규제비용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1개 법령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규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중이 법령군마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30개 이상의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6개 법령군 중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법령군이 유일하게 58개의 규제 조항 중 59%에 달하는 34개의 조항에서 피규제자에게 직접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나머지 법령군에서는 규제 비용을 발생시키는 조항의 비율이 대체로 50% 이하로 나타남

- 규제 조항의 수가 가장 많은 「방송법」 및 하위 법령도 실제로 피규제자에게 규제 비용을 발생시키는 조항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219개 규제 조항 중 37% 정도에 불과함. 나머지 139개 규제 조항은 피규제자에게 직접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됨

<표 3-11> 법령군별 규제비용 발생 여부

법 령	비용발생	비용미발생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27
2. 방송문화진흥회법		2
3. 방송법	80	139
4. 전파법	12	3
5. 전기통신사업법	34	24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8	51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7	2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4	16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1	37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
합 계	198	308

주 : 규제정보 포털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제시 순서를 따름

3. 규제 분류 분석 결과의 함의

- 규제 비용 절감은 정부나 규제 기관이 시행하는 규제가 해당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 즉, 피규제자에게 초래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 이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피규제자에게

경제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부담을 실제 ‘비용’의 차원에서 접근

- 구체적으로 규제 비용은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시설 또는 설비 비용, 추가 인력의 고용 또는 교육비용 등 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문서 작업, 인허가 신청, 보고서 제출이나 신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규제로 인해 사업 기회가 제한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등을 모두 포함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 조항의 특성을 파악하여 피규제자를 구분하고 비용 발생 여부와 기간을 파악해야 하는데 본 장에서 수행한 규제 조항의 분류 결과는 이러한 작업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더 나아가 본 장에서 제시하는 규제 조항의 분류 및 분석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규제 제·개정의 기반이 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 규제 개선의 용이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들이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쉬운 행정규칙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 비용 절감이 행정규칙 내에서 더 활발히 추진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1개 법령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특히 「방송법」 및 하위 법령에서 행정규칙의 제·개정을 통한 규제 비용 절감 노력이 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

○ 규제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제 조항들의 절반 정도는 행정적 규제이지만, 사회적 규제 역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송법」 법령군은 사회적 규제가 많음

- 다만,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 성격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한 조항에 포

함된 조항이 전체 501개 조항 중 약 41% (206개)를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는 규제 조문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간결하지 않음을 의미

- 따라서 향후 규제의 제·개정 과정에서는 조항들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및 혼합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70% 이상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에는 보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

- 또한 한 조항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 조문이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규제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또는 보다 일관성 있게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함

○ 규제일몰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분석 결과 전체 501개의 조항 중 367개 (69%)의 조항이 규제일몰이 설정되지 않은 규제였음

- 별도의 검토없이 규제가 자연 폐기되는 효력상실형은 규제관리자나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력상실형 규제는 4개에 불과하며 재검토행역시 30% 정도로 나타남

- 규제비용 절감과 규제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효율화 과정에서 규제일몰제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규제 비용 발생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의 규제 조항에서 피규제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규제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단순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

제 4 장 결 론

- 본 연구는 2024년 중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법령을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규제비용 관리제가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는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가 본격적으로 확대시행된 이후 주로 개별 개정안의 비용·편익 분석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모든 규제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함
 - 이러한 시도는 규제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분류·분석은 이전까지의 개별 사례 분석을 넘어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관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2024년 중 이루어진 고시 개정 및 한시적 규제 완화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의 내용을 제시하였음
 - 개별 사례 3건 중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의 시행을 위한 집합건물 독점계약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 유형에 관한 고시 개정의 비용분석에서는 독점계약 체결 금지의 피규제자 즉,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
 - 이때 해당 고시 개정으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없지만, 집합 건물 거주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 등 계량적 측정은 어려우나 중요한

합의를 지니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 이 고시 개정안과 연관된, 금지대상 건물 관리주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고시 개정 역시 피규제자에게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
- 이어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방송사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한시적 완화의 경우, 비용분석 결과 지역 MBC와 지역 민영 방송사에게 2년의 규제 완화 기간 동안¹⁹⁾ 총 47억여 원의 운영비용 절감효과와 아울러 편성의 자율성 확대라는 편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3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 501개를 주요 항목별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이러한 작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전반적인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규제관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피규제자에게 초래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조항의 특성과 피규제자의 구분 및 해당 조항이 발생시키는 직접비용의 규모를 파악해야 함
- 제3장에서 수행한 규제 조항의 분류 결과는 이러한 분석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특히 제3장에서 도출된 규제 조항의 분류 및 분석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규제 제·개정 작업의 기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

○ 구체적으로, 규제 개선의 용이도 분석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는 대부분

19) 연도로는 3개년에 해당함

상대적으로 개선이 쉬운 행정규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규제 비용 절감이 주로 행정규칙 단계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

○ 규제의 성격 분석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501개 규제 조항의 절반이 행정적 규제이지만, 방송과 통신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규제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방송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성격의 규제 조항에 경제적·행정적 성격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규제 조항들을 간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체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규제 방식 분석 결과, 전체 규제 조항의 70% 이상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기술과 혁신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동시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 내용을 명확히 분리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

○ 규제 일몰제 설정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규제 조항의 69%가 일몰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제의 효율적 관리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규제 비용 절감과 규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현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하여 폐지하거나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향후 좀 더 많은 규정에 대하여 규제일몰제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필요한 규제를 성급히 폐기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력상실형 일몰제보다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

- 이를 통해 규제 환경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피규제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규제 조항 분석 시 규제의 성격, 규제 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하나의 조항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의 규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 예를 들어, 경제적 또는 사회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는 행정적 규제가 하나의 조항 안에 동시에 존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가 혼합된 형태로 한 조항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혼재는 규제 조문이 복잡하고 다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규제 정립과 효율적인 규제관리가 필요함을 시사

- 또한 향후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 하나의 조항에는 가능한 한 단일한 성격의 규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비슷한 성격의 규제 내용을 따로 묶어 별도의 조항으로 재구성하는 등 보다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

-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면 규제의 제·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명확히 수정할 수 있게 되어 규제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규제 개선 작업이 좀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또한,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가 간결하고 명확해지면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한결 쉬워질 수 있을 것이므로 피규제자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 준수율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규제 조항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각 규제 항목에 별도의 규제 부담지수를 부여하는 계량화 과정은 시도하지 않았음

- 이는 규제의 정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전반

적 특징과 체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임

- 향후 One-In-One-Out이나 One-In-Two-Out과 같은 방식으로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면 각 규제의 상대적 부담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전 부처의 규제 조항에 적용가능하도록 규제 부담지수를 계량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규제 관리의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규제의 신설과 폐지를 둘러싼 정책적 의사결정을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2.6.1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 방안』.
- 국무조정실(2023), 『202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17),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23).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
- 방송통신위원회(2024). 『2023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이광훈, 김광식(2016).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의 규제부담 실증분석. 『규제연구』제25권 제2호 2016년 12월.
- 조선일보 (2022.6.17.) “규제 하나 만들면 2개 없애... ‘원인 투아웃’ 도입” .
- 한국경제인연합회 (2022. 9. 29).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성과와 시사점” . 『Global Insight』Vol.91.
- 한국기자협회 (2024. 3. 21). “재난통보문 관태료만 연 3억” ... 지역방송, 지원 없고 책임만 많아.
- 한국행정연구원(2024.8.30.) KIPA 규제동향, 2024 여름호 Vol.47.
- 한국행정연구원(2021.11), 『규제비용관리제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59-01.

부 록

[부록 1]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단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대상 건물의 유형) ① 단체계약 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체결 행위가 금지되는 건물(이하 ‘금지대상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그밖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지대상 건물에서 제외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
2. 기업·단체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건물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체계약 등만 가능한 건물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하고, 필요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관리주체의 범위) 건물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또는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관련 법령

방송법 제72조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 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는 제외하며, 이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체 방송시간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 송 프 로 그 램 등의 편성에 관 한 고시 제9조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 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3. 제2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5.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 6.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7.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

[부록 3]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한시적 규제 유예

방송 프로그램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3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반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14 이상 편성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6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반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0분의 26 이상 편성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부록 4] 비용편의 연균계산표

분석 대 상연도	연차	비용	편의	할인계수	비용 (현재가치)	편의 (현재가치)	순비용 (현재가치)	연간균등 순비용
2024	0		1,248,700,000	1.0000	0	1,248,700,000	-1,248,700,000	
2025	1		2,497,400,000	0.9569	0	2,389,856,459	-2,389,856,459	
2026	2		1,248,700,000	0.9157	0	1,143,471,990	-1,143,471,990	
2027	3			0.8763	0	0	0	
2028	4			0.8386	0	0	0	
2029	5			0.8025	0	0	0	
2030	6			0.7679	0	0	0	
2031	7			0.7348	0	0	0	
2032	8			0.7032	0	0	0	
2033	9			0.6729	0	0	0	
2034	10			0.6439	0	0	0	
2035	11			0.6162	0	0	0	
2036	12			0.5897	0	0	0	
		0	4,994,800,000		0	4,782,028,449	-4,782,028,449	-1,664,664,648

주: 할인율 0.045 (4.5%), 분석 대상 기간 3개년도 (2024년 7월 1일- 2026년 6월 30일)

[부록 5]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 조항의 분류²⁰⁾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시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률방식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범	행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네거티브	미설정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범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0	포지티브	미설정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범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0	포지티브	미설정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범	경제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	포지티브	미설정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 의 표시)	범	사회적※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	-	포지티브	미설정

20) 번호의 앞자리는 방통위소관 법 11개의 구분을 의미하며, 규제성격 분류의 ※표는 해당 규제의 성격이 복수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의미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 유해매체 물의 광고금지)	범	사회적※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정보를정 보통신망이유해전송하 거나제한없이공개하는자	-	네거티브	미설정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범	경제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통령령으로정한기준 에해당하는)	-	포지티브	미설정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범	사회적※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	포지티브	미설정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범	사회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자	○	혼합	미설정
1-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범	사회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혼합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범	사회적※	불법정보 유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계시관 관리·운영자	0	혼합	미실정
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준)	범	사회적※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0	혼합	미실정
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범	사회적※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려는자	-	네거티브	미실정
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범	사회적※	속이는 방법으로 정보 수집 또는 제공하는자	0	네거티브	미실정
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범	사회적※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제공자	0	네거티브	미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범	행정적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업무 위탁또는관리자	-	포지티브	미실정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업무 제공 등의 제한)	범	행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 전송 업무 제공 또는 관리자)	0	혼합	미실정
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범	사회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운영하는 자)	-	포지티브	미실정
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범	사회적※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게시하려는자	0	네거티브	미실정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범	사회적	불법행위를 목적으로광고성정보를 전송하려는자	-	네거티브	미실정
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범	행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0	포지티브	미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시행령	경제적※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하는자	0	포지티브	미설정
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시행령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하는법인또는단체	-	포지티브	미설정
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시행령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지정받은자	-	포지티브	미설정
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	시행령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	포지티브	미설정
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시행령	행정적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 의 표시방법)	시행령	사회적※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지티브	미실정
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시행령	경제적※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매개하며인정 기준에부합하는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	포지티브	미실정
1-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 의 업무)	시행령	사회적※	청소년 보호책임자로 지정된자	○	포지티브	미실정
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 의 지정기한)	시행령	행정적※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지티브	미실정
1-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시행령	행정적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정보를 유통시키는자	○	포지티브	미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1-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 등)	시행령	행정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0	포지티브	미설정
1-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시행령	행정적※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는자	-	포지티브	미설정
1-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시행령	행정적※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는자	-	포지티브	미설정
1-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시행령	행정적※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프로그램을설치하 려는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광고성프로그램 개발및배포자, 광고시행 사업자등)	-	포지티브	미설정
1-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료제출 등)	시행령	행정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청소년 보호책임 대상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1-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포방법 등)	시행령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0	포지티브	미설정
1-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시행령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0	포지티브	미설정
1-39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의 공고)	행정규칙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40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지정심사계획의 수립)	행정규칙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0	포지티브	재검토형
1-41	본인확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서류의 보정 등)	행정규칙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42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심사기준)	행정규칙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법방식
1-43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심사일)	행정규칙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44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행정규칙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0	포지티브	재검토형
1-45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지정서 교부)	행정규칙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46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	행정규칙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47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신고)	행정규칙	행정적※	본인확인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0	포지티브	재검토형
1-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시행규칙	행정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2-1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법	사회적	방송문화진흥회	-	포지티브	미설정
2-2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시행령	사회적	방송문화진흥회	-	포지티브	미설정
3-1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법	경제적	방송사업자(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 합편성, 보도전문). 대기업 및 계열사, 일간신문 경영법인, 정당, 기타 특수 관계자	○	네거티브	효력상실형
3-2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법	경제적※	방송사업 신청자	-	포지티브	미설정
3-3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법	행정적※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 포함)	-	포지티브	미설정
3-4	방송법	제100조(제제조치등)	법	행정적※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및 방송출연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5	방송법	제13조(결격사유)	범	경제적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개인, 법인 등 (외국정부, 단체도 포함)	-	네거티브	미설정
3-6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범	경제적※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출자 또는 자본소유 외국 정부, 단체, 외국인 포함)	0	네거티브	미설정
3-7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	범	경제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8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범	경제적※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	0	포지티브	미설정
3-9	방송법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범	경제적※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0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범	경제적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 송채널사용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11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범	경제적※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의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	0	네거티브	미설정
3-12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범	사회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13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범	사회적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제작자	-	포지티브	미설정
3-14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 황평가위원회)	범	행정적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 원회	0	포지티브	미설정
3-15	방송법	제55조의2(이사·집행기관 의 보수 등의 공개)	범	사회적※	한국방송공사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6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법	경제적	수상기 소지 개인 또는 단체	0	포지티브	미설정
3-17	방송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법	경제적※	수상기 소지 개인 또는 단체	0	포지티브	미설정
3-18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법	사회적	방송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3-19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법	경제적※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 및 일간신문 경영 법인	0	네거티브	미설정
3-20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법	사회적※	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 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	0	포지티브	미설정
3-21	방송법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법	사회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22	방송법	제72조(순수의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법	사회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23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범	사회적※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광고주	○	포지티브	미설정
3-24	방송법	제74조(협찬고지)	범	행정적※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	포지티브	미설정
3-25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범	경제적※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	-	포지티브	미설정
3-26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범	사회적※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	○	네거티브	미설정
3-27	방송법	제78조(계송신)	범	사회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28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범	행정적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음악 유선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29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범	사회적※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3-30	방송법	제91조(조정 의 개시)	범	행정적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31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	범	행정적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 송망사업자,외주제작사	-	포지티브	미설정
3-32	방송법	제98조의2(재상항의 공표)	범	행정적※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일정 매출액 이상)	0	포지티브	미설정
3-33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시행령	행정적	방송사업자 및 관련 법인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3-34	방송법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시행령	경제적※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 종편 및 보도채널) 및 해당 사업을 경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법인 또는 일간지 또는 특수관계자	O	혼합	미설정
3-35	방송법 시행령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시행령	경제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36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시행령	경제적※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자(종합편성, 보도전문, 홀쇼핑)	-	포지티브	미설정
3-37	방송법 시행령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시행령	경제적※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신청자	-	포지티브	미설정
3-38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시행령	경제적※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O	포지티브	미설정
3-39	방송법 시행령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시행령	경제적※	외국 자본 또는 외국인 지분 포함한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40	방송법 시행령	제15조(변경허가 등)	시행령	경제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41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시행령	경제적※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자	-	포지티브	미설정
3-42	방송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시행령	경제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43	방송법 시행령	제17조(허가·승인·등록·신 고수리의 취소 등)	시행령	경제적※	허가·승인·등록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 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전송망사업자 등	-	포지티브	미설정
3-44	방송법 시행령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시행령	행정적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 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45	방송법 시행령	제23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시행령	행정적	방송사업자(경쟁상황 평가 대상)	0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3-46	방송법 시행령	제35조의2(이사·집행기관 의 보수 등의 공개)	시행령	사회적※	한국방송공사	-	포지티브	미설정
3-47	방송법 시행령	제38조(수상기의 등록)	시행령	경제적	수상기 소지자	0	포지티브	미설정
3-48	방송법 시행령	제40조(등록변경신고)	시행령	행정적	수상기 등록자	0	포지티브	미설정
3-49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시행령	경제적※	수상기 소지자, 한국방송공사	0	포지티브	미설정
3-50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시행령	행정적	한국방송공사 또는 지정받은자	0	포지티브	미설정
3-51	방송법 시행령	제47조(가산금·추징금 등의 징수)	시행령	경제적※	한국방송공사	0	포지티브	미설정
3-52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시행령	사회적※	방송사업자(종합편성)	-	포지티브	미설정
3-53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예인의 시청지원)	시행령	사회적※	방송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3-54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행령	사회적※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3-55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시행령	행정적※	방송사업자 및 특수관계자	-	포지티브	미설정
3-56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시행령	경제적※	방송사업자(시청 점유율 초과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57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시행령	경제적※	방송사업자(시청 점유율 초과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58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시행령	경제적※	방송사업자(시청 점유율 초과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59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시행령	경제적※	방송사업자(시청 점유율 초과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3-60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시행령	사회적※	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 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효력상실형
3-61	방송법 시행령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시행령	사회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0	혼합	미설정
3-62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신청 및 운용범위)	시행령	사회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0	혼합	미설정
3-63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시행령	사회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64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순수의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시행령	사회적※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 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 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65	방송법 시행령	제60조(협찬고지)	시행령	사회적※	방송사업자	-	혼합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66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령	행정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6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조(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행정규칙	사회적※	지상파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6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허가 신청)	행정규칙	경제적※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69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행정규칙	사회적※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70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71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7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품위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73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청약철회 등의 고지)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74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행정규칙	사회적※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 방송제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75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4조(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	0	포지티브	재검토형
3-76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관련규정의 준수)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7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외국자본의 출연)	행정규칙	경제적※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78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79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급표시)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80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5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	행정규칙	행정적	국내제작물 인정신청 방송사업자 또는 제작자	0	포지티브	제검토형
3-81	장예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예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장예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행정규칙	경제적	장예인방송 편성 의무 대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제검토형
3-82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시청점유율 산정대상)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송채널 제공자	-	포지티브	제검토형
3-83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가상광고의 고지 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0	혼합	제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3-84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광고효과와의 제한)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	네거티브	재검토형
3-8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변경허가 등)	행정규칙	경제적※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86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87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등급 사전고지)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88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행정규칙	행정적	국내제작물 인정신청 방송사업자 또는 제작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89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행정규칙	사회적※	필수지정사업자로 지정된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90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산정)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구독률 산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포지티브	재검토행
3-91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가상광고의 크기 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0	혼합	재검토행
3-92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협찬주명의 방송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	네거티브	재검토행
3-93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행정규칙	경제적※	최다액출자 변경 방송사업자	0	포지티브	재검토행
3-94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음향·화면)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95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자체심의)	행정규칙	행정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9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행정규칙	행정적※	국내제작물 인정신청 방송사업자 또는 제작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3-9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용)	행정규칙	사회적※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 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3-98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위원회, 일간신문 구독률 조사 대상 언론사	-	포지티브	재검토행
3-99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	네거티브	재검토행
3-100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및 협찬주	-	네거티브	재검토행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01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재허가 등)	행정규칙	경제적※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0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안전성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03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예고방송)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3-104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의 편성비율)	행정규칙	사회적※	외국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편성하는 방송사업자	0	포지티브	재검토형
3-105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8조(장애인방송 성실제공 의무)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06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매체교환율)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조사대상 방송사 및 일간신문사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07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텔레비전방송채널)	행정규칙	경제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08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국가등의 존엄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09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9조(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10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시청률의 합)	행정규칙	행정적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1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행정규칙	사회적※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 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12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라디오 방송채널)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3-113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환경보호 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1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품위 등)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115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시청점유율 조사)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위원회	-	포지티브	재검토행
3-116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재조치명령의 절차)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3-117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0	혼합	미설정
3-11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선정성)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19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편성비용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120	강제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강제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1조(강제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행정규칙	행정적	필수지정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0	포지티브	재검토형
3-121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시청점유율 산정방법)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 일간신문 경영 법인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22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제조치명령의 이행 등)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23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표절금지)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2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공정성)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12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2조(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별)	행정규칙	경제적※	신기술 시험방송 실시 방송사업자	-	네거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26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2조(실적자료 제출)	행정규칙	행정적	필수지정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27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자료제출)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 일간신문 겸영 법인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28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자료제출 등)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29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 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30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특정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13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3조(편성비용 적용기간)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32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위원회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I33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미끼광고의 제한)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I3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원산지 등 표시)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I35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4조(소명절차)	행정규칙	행정적	필수지정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I36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삼제의식광고의 제한)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I37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38	장애인방송 편성 및 재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5조(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 업자, 텔레비전 수상기 제조사,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39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140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충동구매)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14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실증책임)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포지티브	미설정
3-14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보도형식의 표현)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143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행정규칙	행정적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44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145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보도내용 등의 인용)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146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8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행정규칙	행정적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47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실연·실험·조사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4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수상·인증등)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149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9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150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추천·보증)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I5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특허등)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I5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언어)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I53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출처명시)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I5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1조(방송실시결과 의 제출 등)	행정규칙	행정적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3-I55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음악)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I56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자료인용)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57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어린이·청소년)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15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최상급 표현)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159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160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재방송)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161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행정규칙	행정적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포지티브	제검토형
3-16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식품)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163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혐오감)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6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비과학적내용)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165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의약품)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O	혼합	미설정
3-166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화면비교)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167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의약외품)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6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음향·화면)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169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의료기기)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O	혼합	미설정
3-170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안전성)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7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긴강보조기구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7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국가등의 존엄성)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173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화장품)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17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환경보호 등)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175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농약)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76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77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주류)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17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차별금지 등)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179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영화·비디오물·공 연물·게임물)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포지티브	미설정
3-180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18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부동산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18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실연·실함·조사)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83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학교·학원·강습소· 학습교제 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8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추천·보증)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3-185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여행·관광등)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186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187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투자자문업·투자일 임업)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8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음악)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89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음성정보서비스)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포지티브	미설정
3-190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어린이·청소년)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19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통신판매)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혼합	미설정
3-19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가격표시)	행정규칙	경제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설정
3-193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종교)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94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정치)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3-195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96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할인특매)	행정규칙	경제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0	혼합	미설정
3-197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네거티브	미설정
3-198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심의 절차의 준용)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방송광고 송출자) 방송광고제작자, 광고주	-	포지티브	미설정
3-199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자동주문진화)	행정규칙	경제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200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기타 가격표시)	행정규칙	경제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0	혼합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률방식
3-20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식품등)	행정규칙	사회적	식품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실정
3-20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의약품)	행정규칙	사회적	의약품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실정
3-203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의료기기)	행정규칙	사회적	의료기기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실정
3-20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건강보호기구등)	행정규칙	사회적	건강보호기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실정
3-205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화장품)	행정규칙	사회적	화장품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실정
3-206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이미용기구)	행정규칙	사회적	이미용기구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혼합	미실정
3-207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영화·비디오물·공 연물)	행정규칙	사회적	영화, 비디오, 공연물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률방식
3-20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6조(학습교재 등)	행정규칙	사회적	학습교재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행
3-209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7조(여행·관광등)	행정규칙	사회적	여행 및 관광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행
3-210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8조(투자자문업·투자인 임업)	행정규칙	사회적	투자자문업 및 투자임업과 관련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행
3-21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8조의2(부동산등)	행정규칙	사회적	부동산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0	혼합	미설행
3-212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보험상품)	행정규칙	사회적	보험상품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행
3-213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상품권)	행정규칙	사회적	상품권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행
3-214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1조(의류)	행정규칙	사회적	의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행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3-215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2조(속옷)	행정규칙	사회적	속옷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216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수기 등)	행정규칙	사회적	정수기 및 연수기 관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217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조(출연제한)	행정규칙	사회적	공무원 및 상품소개·판매방송 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3-218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전체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	포지티브	재검토형
3-219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전체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중계방송권자, 방송통신 위원회	○	혼합	재검토형
4-1	전파법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법	행정적※	무선국 시설자의 지위 승계하려는자	○	포지티브	미설정
4-2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법	행정적※	무선국 개설 및 운용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4-3	전파법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법	경제적	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제허가 희망자(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4-4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법	경제적※	무선국 시설자 (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	○	포지티브	미설정
4-5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법	경제적※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	포지티브	미설정
4-6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시행령	행정적	무선국 운영자, 무선설비 제조/판매자, 주파수 및 전파자원 사용권자 등	-	포지티브	미설정
4-7	전파법 시행령	제31조(허가의 신청)	시행령	행정적※	무선국 개설허가 희망자	○	포지티브	미설정
4-8	전파법 시행령	제38조(제허가)	시행령	행정적※	주파수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무선국 시설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4-9	전파법 시행령	제39조(재승인)	시행령	행정적※	주파수 사용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자(기간통신사 업자, 방송사업자, 주파수 사용 기관 및 단체, 무선설비 사용자)	0	포지티브	미설정
4-10	전파법 시행령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시행령	행정적※	무선국 시설자 지위 승계신청자	0	포지티브	미설정
4-11	전파법 시행령	제51조(폐지·운용휴지 등)	시행령	행정적	무선국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4-12	전파법 시행령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시행령	행정적※	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자	0	포지티브	미설정
4-13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시행령	경제적※	과태료 부과 대상자(무선국 및 주파수 사용자, 무선설비 제조, 유통사업자, 전파 및 주파수 이용관리 의무 위반자)	0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4-14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행정규칙	행정적	지상파 방송국 및 지상파 방송보조국 운영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4-15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0조(재검토키한)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위원회	○	포지티브	재검토행
5-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 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법	사회적※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저작권 법 관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문자 발송 시스템 운영자)	○	포지티브	미설정
5-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 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	사회적※	부가통신사업자,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	혼합	미설정
5-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엘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법	사회적※	엘 마켓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5-4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법	경제적※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정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5-5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 물 등의 차단)	범	사회적※	전기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5-6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범	경제적	기간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5-7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정보의 제공)	범	경제적	기간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5-8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상호점속 등 협정의 신고 등)	범	경제적※	상호점속 관련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5-9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 정리)	범	행정적	기간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5-10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범	경제적※	전기통신사업자 (앱 마켓사업자 포함)	○	네거티브	미실정
5-11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범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	○	포지티브	미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5-12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범	행정적	금지행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5-13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범	행정적	금지행위 관련 조치 불이행 전기통신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5-14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범	경제적※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5-15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손해배상)	범	경제적※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5-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시행령	행정적	기간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5-1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시행령	사회적※	부가통신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정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5-1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시행령	사회적※	특수유통부가통신사업자 (앱마켓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O	포지티브	미설정
5-1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시행령	사회적※	앱 마켓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5-2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시행령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5-2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령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앱마켓사업자 포함)	-	포지티브	미설정
5-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시행령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5-2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시행령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5-2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시행령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O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5-2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시행령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5-26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형
5-27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행정규칙	경제적※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네거티브	재검토형
5-28	시장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3조(공표요건)	행정규칙	행정적	시장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0	포지티브	재검토형
5-29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위법성 판단기준)	행정규칙	사회적※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결합판매서비스 제공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5-30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4조(공표의 객체 등)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5-3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5조(공표할 신문의 선정)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5-3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6조(자료 등 제출명령)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5-3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6조(공표일)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5-34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7조(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5-3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7조(개제면)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0	포지티브	재검토행
5-36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8조(현장조사)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5-37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8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0	포지티브	재검토행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정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5-38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9조(공표크기 및 매체수)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5-39	방송통신사업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	행정규칙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5-40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1조(잡지 등 공표)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5-4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2조(공표대상 및 장소)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행
5-4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3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행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5-43	시장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4조(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행정규칙	행정적	시장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0	포지티브	제검토형
5-44	시장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5조(공표방법 등)	행정규칙	행정적	시장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0	포지티브	제검토형
5-45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7조(경고)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제검토형
5-46	시장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7조(공표대상 등)	행정규칙	행정적	시장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온라인플랫폼운영자	0	포지티브	제검토형
5-47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8조(제조사)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	-	포지티브	제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정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5-48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9조(준용)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0	포지티브	재검토형
5-49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0조(무혐의)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형
5-50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20조(고지방법 등)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0	포지티브	재검토형
5-51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1조(사진종결처리)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형
5-5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2조(심의중지)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5-5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22조(준용)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 자, 위치정보사업자	0	포지티브	재검토형
5-54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4조(시정명령)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형
5-55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명령이행여부 확인)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형
5-5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전체(전체)	행정규칙	사회적※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성능평가 수행기관	0	포지티브	재검토형
5-57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전체(전체)	행정규칙	사회적※	전기통신사업자,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0	네거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5-58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전체(전체)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조치 불이행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및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법	경제적※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법인	○	포지티브	미실정
6-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법	경제적※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법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임원·종업원	○	네거티브	미실정
6-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법	경제적※	위치정보사업자 및 양수인, 합병 후 존속 법인	○	포지티브	미실정
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법	경제적※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6-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의 신고)	범	사회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 업의 양수 및 범인의 합병 등)	범	행정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	포지티브	미설정
6-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 업의 휴업·폐업 등)	범	행정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범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범	경제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0	네거티브	미설정
6-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범	사회적※	모든 개인 및 단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 수집장치 관련 판매자 포함	0	네거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6-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범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6-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범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및 종업원	-	네거티브	미설정
6-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범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범	사회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범	경제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범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0	네거티브	미설정
6-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범	사회적※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6-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범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양수인	-	포지티브	미설정
6-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범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 의 권리 등)	범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범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범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	포지티브	미설정
6-2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범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	포지티브	미설정
6-2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범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정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6-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범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6-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범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6-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준용 규정)	범	행정적	정부기관 및 위치정보 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6-2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시행령	경제적※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법인	-	포지티브	미실정
6-3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시행령	경제적※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 법인, 방송통신위원회	-	포지티브	미실정
6-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시행령	행정적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6-3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 업의 신고 등)	시행령	경제적※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6-3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시행령	행정적※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 법인	-	포지티브	미설정
6-3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승인 등)	시행령	경제적※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3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시행령	행정적※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3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시 자료 파기)	시행령	행정적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6-3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시행령	행정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3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시행령	행정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 운영자	-	포지티브	미설정
6-3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시행령	행정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양수인, 합병 후 존속 법인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6-4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 업의 휴업·폐업의 신고)	시행령	행정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4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시행령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4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령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시행령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등	O	포지티브	미설정
6-4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시행령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4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시행령	행정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4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시행령	사회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6-4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행령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2(개인위치정보 처리방법의 공개)	시행령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4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시행령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5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시행령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6-5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시행령	사회적※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6-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시행령	사회적※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	포지티브	미설정
6-5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구조반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시행령	사회적※	경찰관서, 위치정보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6-5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시행령	행정적	긴급구조기관,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정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6-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시행령	사회적※	긴급구조기관,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5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시행령	사회적※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	포지티브	미설정
6-5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시행령	사회적※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위치정보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6-5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자료제출 요구)	시행령	행정적	위치정보사업자 및 관련 당사자	-	포지티브	미설정
6-5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포)	시행령	행정적	피심인(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6-6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행정규칙	경제적※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	포지티브	제검토형
6-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행정규칙	행정적※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 합병 신청자	-	포지티브	제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6-6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행정규칙	행정적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6-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5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행정규칙	행정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6-6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6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행정규칙	행정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 합병, 분할 신청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6-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	행정규칙	행정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6-6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0조(이행결과의 보고)	행정규칙	행정적	폐심인(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위치정보사업자)	O	포지티브	재검토형
6-67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6조(이행결과의 보고)	행정규칙	행정적	사업장, 대리점, 판매점 및 시정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6-68	시장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8조(이행결과의 보고)	행정규칙	행정적	인터넷 공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형
6-69	시장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20조(고지방법 등)	행정규칙	행정적	개별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가진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련된 위치정보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7-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법	행정적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네거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8-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법	경제적	방송사업자(지상파·종합 편성·보도 채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품 판매 방송 채널 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8-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법	행정적※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자)	○	혼합	미설정
8-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분담금의 징수)	시행령	경제적※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8-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시행령	사회적※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8-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징수율의 산정)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	포지티브	미설정
8-6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0	포지티브	미설정
8-7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최종징수율의 산정)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8-8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체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사업자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 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0	포지티브	제검토형
8-9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전체	행정규칙	사회적※	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0	혼합	제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9-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범	경제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9-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변경허가 등)	범	경제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취대출자자	○	포지티브	미설정
9-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	범	행정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9-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재허가)	범	경제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9-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범	경제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9-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 의 결격사유)	범	경제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	-	네거티브	미설정
9-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범	경제적	광고판매대행자, 지주회사, 정당, 기업집단	○	혼합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9-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용약관 신고)	범	행정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9-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사 등의 금지행위)	범	경제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방송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9-1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	범	경제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9-1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광고판매대행사 지정)	범	경제적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광고판매대행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9-1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방송광고 결함판매 지원)	범	경제적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9-1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범	행정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아닌 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기타 법인	-	네거티브	미설정
9-1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감독 등)	범	행정적	한국방송광고공사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9-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제출)	법	행정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방송사업자	○	혼합	미설정
9-1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정명령)	법	행정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9-1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시행령	행정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9-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소유제한의 범위)	시행령	행정적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	포지티브	미설정
9-1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령	행정적※	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방송사업자	-	네거티브	미설정
9-2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방송광고 수수료)	시행령	경제적	방송사업자, 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	○	포지티브	미설정
9-2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시행령	경제적	방송통신위원회, 광고판매대행사업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9-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감독)	시행령	행정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 회	0	포지티브	미설정
9-23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3조(결합판매사업자)	행정규칙	행정적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의 광고판매대행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9-24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4조(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용 산정)	행정규칙	행정적※	결합판매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9-25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5조(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	행정규칙	행정적※	결합판매사업자, 지원대상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9-26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6조(결합판매 균등지원)	행정규칙	행정적※	결합판매사업자, 지원대상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9-27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7조(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 실적 관리)	행정규칙	행정적※	결합판매사업자, 지원대상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9-28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8조(자료의 제출 등)	행정규칙	행정적	결합판매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9-29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9조(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위원회 결합판매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9-30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10조(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제고시)	행정규칙	경제적	결합판매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법	경제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네거티브	미설정
10-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파다 지급 제한 및 공시)	법	경제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혼합	효력상실형
10-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법	경제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네거티브	미설정
10-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법	사회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혼합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10-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판매점 선입에 대한 승낙 등)	범	경제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혼합	미설정
10-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범	경제적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네거티브	미설정
10-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긴급중지명령)	범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10-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범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효력상실형
10-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실조사 등)	범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10-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범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10-1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담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시행령	경제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0	네거티브	미설정
10-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시행령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미설정
10-1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료 제출 및 보관)	시행령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10-1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시행령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10-1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시행령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10-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 등)	시행령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10-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시행령	행정적	과징금 납부 의무자(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미설정
10-18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행정규칙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네거티브	제검토형
10-19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행정규칙	행정적	금지행위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제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정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10-20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긴급중지명령의 유형)	행정규칙	행정적	이동통신사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2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3조(공표요건)	행정규칙	행정적	피심인(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2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4조(공표의 객체 등)	행정규칙	행정적	피심인(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23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규칙	행정적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2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5조(공표할 신문의 선정)	행정규칙	행정적	피심인(신문 공표를 해야하는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10-25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6조(자료 등 제출명령)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10-2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6조(공표일)	행정규칙	행정적	시정명령 이행 대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10-27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7조(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10-28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7조(게제면)	행정규칙	행정적	공표대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10-29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8조(현장조사)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30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8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행정규칙	행정적	공표대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3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9조(공표크기 및 매체수)	행정규칙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3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	행정규칙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혼합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10-3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1조(잡지 등 공표)	행정규칙	행정적	잡지 공표 대상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3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2조(공표대상 및 장소)	행정규칙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3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3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행정규칙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3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4조(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행정규칙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형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정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10-37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5조(공표방법 등)	행정규칙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10-38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7조(공표대상 등)	행정규칙	행정적	인터넷 공표 대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10-39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7조(경고)	행정규칙	행정적	금지행위를 한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행
10-40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8조(제조사)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행
10-4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9조(준용)	행정규칙	행정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일몰방식
10-4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20조(고지방법 등)	행정규칙	행정적	피심인(고지 대상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O	포지티브	재검토행
10-43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0조(무혐의)	행정규칙	행정적	금지행위 의심을 받은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행
10-44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1조(사건종결처리)	행정규칙	행정적	피심인(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행
10-4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22조(준용)	행정규칙	행정적	피심인(공표 대상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포지티브	재검토행
10-46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2조(심의중지)	행정규칙	행정적	피심인(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신고인	-	포지티브	재검토행

No.	규제명	조항	규제개선 용이도	규제성격	피규제자	규제 비용	규제방식	입몰방식
10-47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4조(시정명령)	행정규칙	행정적	방송통신위원회	-	포지티브	재검토형
10-48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명령이행여부 확인)	행정규칙	행정적	금지행위를 한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	포지티브	재검토형
11-1	한국교육공사법	제18조의 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법	사회적※	한국교육방송공사	-	포지티브	미설정
11-2	한국교육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시행령	사회적※	한국교육방송공사	-	포지티브	미설정

주 : 1) 번호의 앞자리는 방통위소관 법 11개를 의미

2) ※표는 해당 규제의 성격이 복수로 분류가 가능함을 의미

● 저 자 소 개 ●

주 성 희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학사/석사
- Northwestern University 석사
- Univ. of Michigan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 민 선

- 고려대 법학과 학사
- 고려대 언론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 찬

- 연세대 경제학 학사/석사
- Univ. of North Carolina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은 진

- 연세대 신문방송학 학사
- 연세대 언론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방송융합정책연구 KCC-2024-02

2024년 방송통신 분야 법령·행정규칙
규제개선 사항 및 규제비용 분석
(Cost-in, Cost-out Analysis of Regulatory
Revision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ctor in 2024)

2024년 12월 일 인쇄

2024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

인쇄 경성문화사

